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SEOUL EDUCATIONAL FACILITIES MANAGEMENT OFFICE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장재원(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동연구원 | 이병호(한국교육시설안전원)

손영균(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재영^A(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수환(한국교육시설안전원)

조창희(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재영^B(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금지(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기원(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종극(학교안전센터)

보조연구원 | 박서현(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태훈(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과제담당관 | 조은영(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연구협력관 | 이진희(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김만태(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안용한(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출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2026년 3월에 체결한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허성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의 내용	4
나.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범위	6
가. 공간적 범위	6
나. 내용적 범위	6
4. 기대효과	7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1. 학교수영장 현황 분석	11
가.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	11
나. 준공연도별 현황	13
다. 지역별 현황	14
라. 운영주체별 현황	14
마. 교육시설관리본부 운영 현황	15
2. 부속시설, 부대시설 현황 분석	16
가. 부속시설(부대시설 포함) 설치 현황	16
나. 부대시설 기능별 분류	22
3. 현장 사례조사	23
가. 조사 개요	23
나. 운영 및 관리 실태 사례조사	26
다. 사례조사 시사점	32

Chapter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안전관리 기준 및 사례조사

1. 문헌조사	35
가.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2023)	35
나. 미래학교를 위한 공간재구조화 경향 분석 연구(2025)	36
다. 신도시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 설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2023)	36
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생활밀착형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2025)	37
마. 시사점	37
2.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관련 법령 및 용도 분류	38
가. 소관 법령	38
나. 부대시설 용도 분류	39
다.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법령상 용도	47
3. 법령별 설치·안전관리 기준	48
가. 「체육시설법」	48
나. 「학교보건법」	54
다. 조도 기준	59
라. 「학교복합시설법」	61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2
바. 「공중위생관리법」	63
사. 「다중이용업소법」	66
아. 바닥매트 설치기준	69
4. 타 기관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사례	71
가. 타 기관 시설관리 사례	71
나. 타 기관 안전점검 매뉴얼 사례	73

IV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1. 전문가 의견수렴	81
가. 조사개요	81
나. 자문의견	81
2.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안전관리 기준 구성 방안	83
가.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	83
나. 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안전점검 항목	88
다.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	93
3. 설치·안전점검 체크리스트(점검용)	101
가.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1
나. 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2
다.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4

V

연구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111
가. 학교수영장 및 부대시설 운영 현황 분석	111
나. 법령 및 기준 검토를 통한 적용 체계 구성	112
다.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안전관리 기준 구성	112
라.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마련	113
마.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관리 기준 마련	113
2. 제언 사항	115
가. 학교시설 관리주체의 시설관리 의무 사항에 대한 병행 필요	115
나. 최초 기 구축시설 이외의 추가(증축 등)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필요	115
다. 공공에 개방되는 체육시설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필요	115
라. 시설 노후화 보완 시 해당 기준의 병행 고려	116
마. 복합화시설(체육시설 등 포함)과 교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차별적 구체화 기준 필요	116
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	116

참고문헌	117
부록	119

표 목차

[표 I-1]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급별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	3
[표 II-1]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현황	12
[표 II-2]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지역별 분포 현황	14
[표 II-3]	학교수영장 현황(운영관리 주체별)	15
[표 II-4]	부속시설(부대시설 포함)	16
[표 II-5]	학교수영장 부속시설(부대시설 포함)	17
[표 II-6]	현장조사 대상 시설	23
[표 II-7]	현장조사 항목	25
[표 II-8]	언남고등학교 시설 개요	26
[표 II-9]	언남고등학교 배치(평면)도	26
[표 II-10]	서울체육고등학교 시설 개요	27
[표 II-11]	서울체육고등학교 배치(평면)도	27
[표 II-12]	서울이태원초등학교 시설 개요	28
[표 II-13]	서울이태원초등학교 배치(평면)도	28
[표 II-14]	서울옥정초등학교 시설 개요	29
[표 II-15]	서울옥정초등학교 배치(평면)도	29
[표 II-16]	서울금호초등학교 시설 개요	30
[표 II-17]	서울금호초등학교 배치(평면)도	30
[표 II-18]	서울홍제초등학교 시설 개요	31
[표 II-19]	서울홍제초등학교 배치(평면)도	31
[표 II-20]	현장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 요소	32
[표 III-1]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관련 소관 법령	38
[표 III-2]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41
[표 III-3]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43
[표 III-4]	다중이용업 종류 및 적용기준	46
[표 III-5]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관련 법령 체계	47
[표 III-6]	체육시설 설치 기준(공통)	48
[표 III-7]	설치 기준(수영장)	49
[표 III-8]	수영장 욕수 수질기준	50
[표 III-9]	설치 기준(체력단련장)	50
[표 III-10]	설치 기준(체육도장)	51
[표 III-11]	설치 기준(골프연습장)	51
[표 III-12]	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52
[표 III-13]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53
[표 III-14]	환기·채광·조명·온습도	54
[표 III-15]	상하수도·화장실	56
[표 III-16]	폐기물·소음	56

[표 III-17]	공기질 유지기준	57
[표 III-18]	식기식품 및 먹는물	58
[표 III-19]	학교시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종류 및 시기	59
[표 III-20]	조도 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59
[표 III-21]	장소별 조도기준	60
[표 III-22]	편의시설 설치기준	62
[표 III-23]	목욕장업 설비기준	64
[표 III-24]	목욕장업 수질기준	65
[표 III-25]	안전시설 종류	66
[표 III-26]	안전기준 설치 기준	67
[표 III-27]	D**** 사 경기장 매트 규격	70
[표 III-28]	매뉴얼 구성(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73
[표 III-29]	매뉴얼 구성(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75
[표 III-30]	매뉴얼 구성(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76
[표 IV-1]	전문가 자문의견 및 반영여부	82
[표 IV-2]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공용부 항목)	84
[표 IV-3]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항목)	88
[표 IV-4]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시설특성별 항목)	93
[표 IV-5]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1
[표 IV-6]	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2
[표 IV-7]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4
[표 IV-8]	체육도장(태권도 등)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4
[표 IV-9]	골프연습장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5
[표 IV-10]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5
[표 IV-11]	체육교습(축구 등)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6
[표 IV-12]	GX실·에어로빅·필라테스 등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6
[표 IV-13]	체온관리실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7
[표 IV-14]	문화강좌실 등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07
[표 V-1]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급별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	111
[표 V-2]	부속시설(부대시설 포함)	111
[표 V-3]	부대시설 설치단계 기준 항목 수	113
[표 V-4]	부대시설 운영단계 기준 항목 수	114
[표 V-5]	부대시설별 안전점검 항목 수 구성	114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내용 및 방법	5
[그림 I-2] 연구의 범위	6
[그림 II-1]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현황	12
[그림 II-2] 학교수영장 준공 현황	13
[그림 II-3] 운영 유형별 구분	22
[그림 II-4] 현장 사례조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절차	23
[그림 II-5] 건축분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예시)	24
[그림 III-1] 체육시설 운영 등에 따른 유형 분류	43



서론

- 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②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③ 연구의 범위
- ④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 학교시설복합화의 경우 2001년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¹⁾을 시작으로 2025년 기준 139개교, 243개 시설(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²⁾이 운영중에 있으며,
- ▶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의 경우 서울덕수초등학교³⁾, 서울연촌초등학교⁴⁾의 수영장 구축을 시작으로 학교시설복합화 등과 함께 48개교⁵⁾가 운영 중에 있음

표 I-1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급별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개교, 공립기준)	48	35	7	6

- ▶ 다수의 학교수영장과 관련 부대시설이 학교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시설로서의 활용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왔음
- ▶ 학교수영장과 관련 부대시설은 다수의 사례가 사용허가⁶⁾ 등을 통해 운영·관리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등에 개방·활용되고 있으나,
- ▶ 학교시설의 개방 요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강화 필요성도 증가되면서 학교현장의 관리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음
- ▶ 이에, 서울교육청의 경우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내 학교수영장 48개소 중 운영·관리 업무 이관 희망 학교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⁷⁾을 계기로 표준화된 수영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1) 서울시 성동구 무수막길 69 소재의 수영장, 체육시설, 주차장, 도서관, 문화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2001년 설립, 현 열린금호교육문화관)
 2)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 p.46(※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한 '23~'25년 7개교 13개 시설 선정에 따른 설립추진이 진행 중인 경우는 미포함)
 3)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40 소재의 수영장 시설 구성(1992년 준공)
 4)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58길 36 소재의 수영장 시설 구성(1998년 준공)
 5) 서울교육청 관내의 공립학교 기준이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사용허가) 등의 법규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하는 행정처분의 경우를 말함
 7) 서울교육청의 경우 학교현장 수영장의 운영·관리 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현시점 관내 학교수영장 48개소 중 이관 희망학교의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업무를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분장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절제50조제4항제8호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총무부 재정지원과의 분장사무로 학교수영장 관련 관리·운영 위탁을 명시하고 있음
 - 관련 조항은 해당 조례 시행규칙의 2024. 6. 20. 일부개정(2024. 7. 1. 시행)에 따라 제50조제4항제8호에 '학교 수영장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 분장업무로 신설되었으며, 2026. 2. 26. 일부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되었음('학교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종합·정리할 상황이 발생함

- ▶ 다만,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특성을 반영한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기존 법령, 기준 등의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또한 요구됨
 -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은 헬스장, GX실, 골프연습장 등으로 다양함
 - 체육시설과 관련한 설치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필라테스실, 요가실 등과 같은 부대시설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 앞서 기술한 연구의 배경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공공성 증대를 위해 개방·활용되고 있는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에 대해 기 법령·지침 등에서 제시된 설치기준 사항을 살피고,
- ▶ 교육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관련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 정리하며,
- ▶ 궁극적으로 안전관리 적절성 강화를 효율화하는 종합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자 함
- ▶ 또한, 「체육시설법」 등에서의 미대상 시설임에 따른 기준 미비 등에 대해 타 지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포함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사례조사
 - 서울교육청 관내 48개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구성에 대한 사례조사 및 현황조사
 - 유사 체육시설의 사례 비교 검토
- ▶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및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의 조사·분석
- ▶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제시
 - 운영관리 측면의 법적 의무 관리 사항에 대한 항목 도출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측면의 부대시설 용도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도출
 - 각 도출 항목별 참고 관리 기준 제시
- ▶ 도출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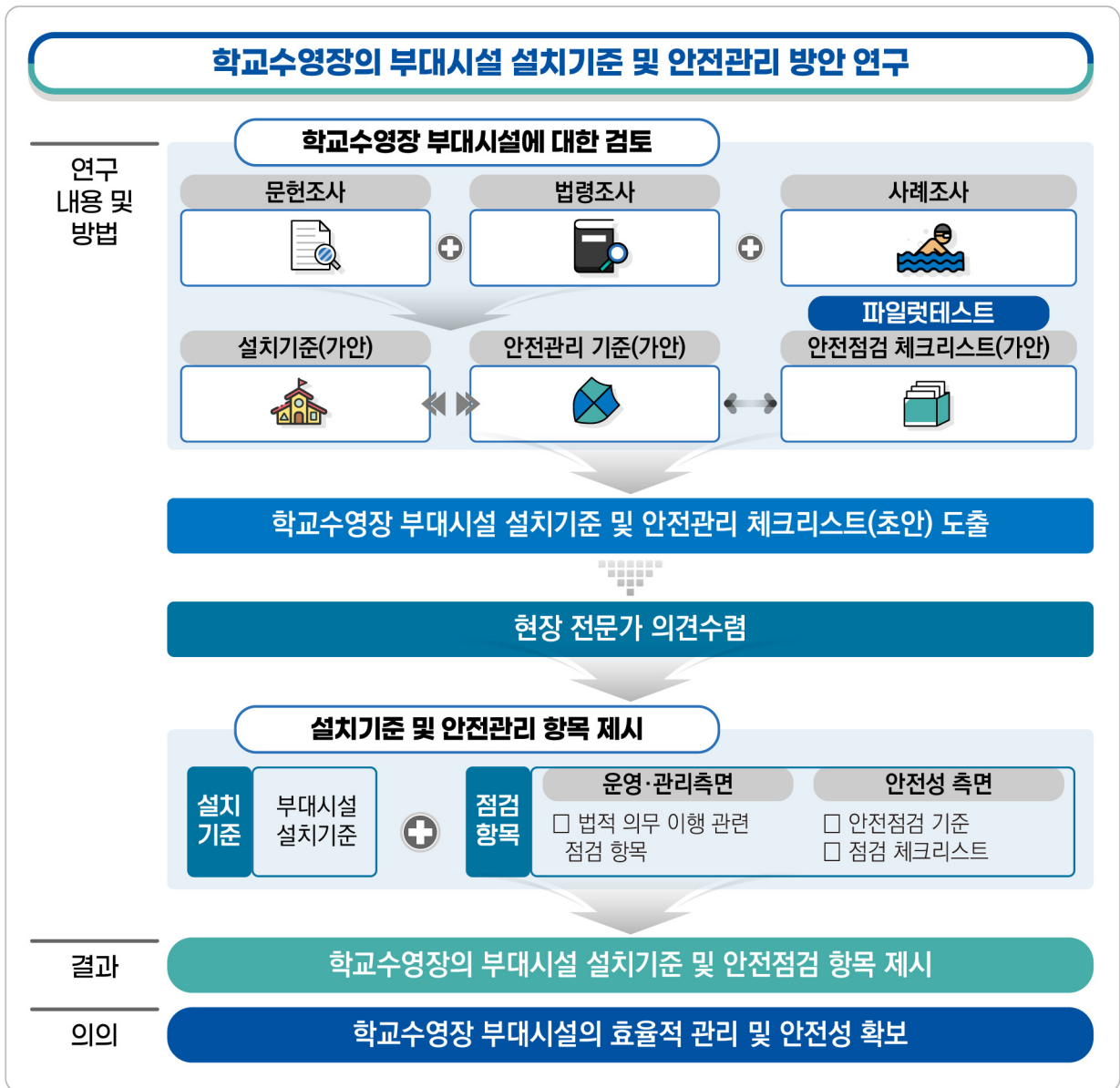
- 해당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및 위탁 대상은 학교수영장과 그 부대시설로 정하고 있음
- 이에, 교육시설관리본부는 2024년부터 학교수영장 시범운영 체계를 구성하고, 순차적 운영·관리 이관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학교수영장지원팀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수영장 포함) 보유 학교 중 시범학교 선정(교육시설관리본부(2024), 주요업무계획, p.23)
- 2025년 시범운영학교 확대(교육시설관리본부(2025), 주요업무계획, pp.28~30)
- 2026년 시범운영학교 확대 및 제도개선(교육시설관리본부(2026), 주요업무계획, pp.23~25)

나. 연구의 방법

- »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관련 운영 현황자료인 교육청 발간 자료⁸⁾ 등을 활용하여 정리·분석하고,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샘플 사례에 대한 현장 확인 답사
 - 부대시설에 대한 용도별 구분
 - 용도별 구분에 따른 시설기준 정리
- » 문헌조사 및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의 분석을 통한 체크리스트 가안을 구성하고, 앞서의 사례조사와 병행하여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하여 항목의 구체화 진행
- » 수정·보완을 통해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 체크리스트 초안 도출
- »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검토·검증을 진행하고 최종 체크리스트 제시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8)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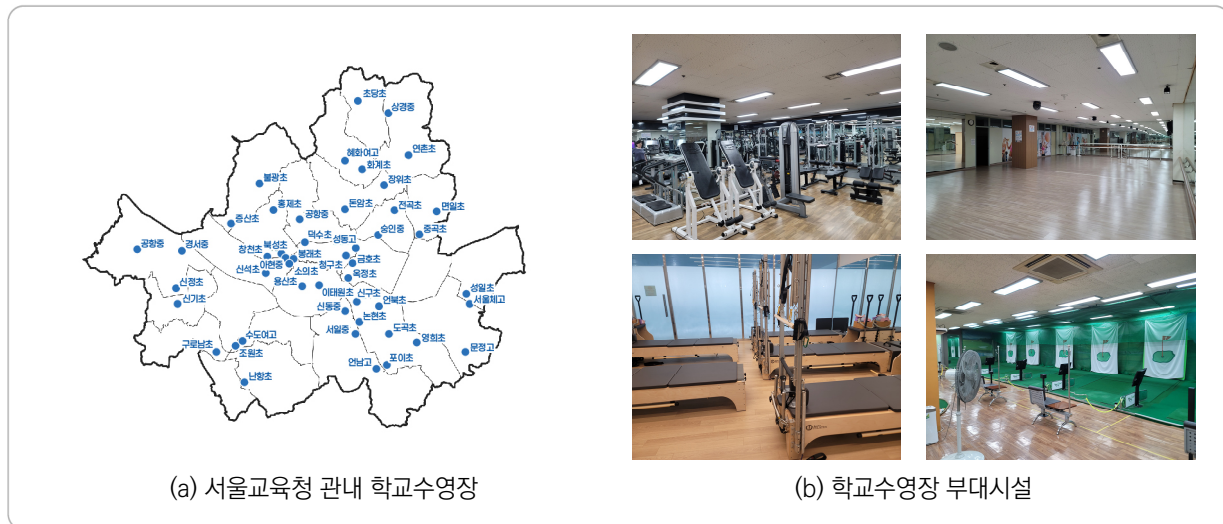
가. 공간적 범위

- » 서울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등학교 1,317개교⁹⁾ 중 학교수영장 보유 시설 48개소의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함
- » 다만, 서울교육청 이외의 타 공공기관 수영장 부대시설의 규정·지침 등을 살펴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내용적 범위

- »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사례조사 및 현황 분석
- » 부대시설의 경우 체육활동(문화강좌 등 포함) 등의 기능적 시설을 대상 범위로 설정하며, 부속시설(운영관리실, 휴게실 등)의 성격은 제외함
 - 본 연구에서의 부대시설 범위는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체육활동(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GX실, 필라테스실 등), 교육·문화활동(문화강좌실 등)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함
- » 체육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한 설치·안전관리 기준 관련 문헌조사 및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의 분석을 통한 체크리스트 제시
 - 설치기준의 경우 면적, 수치적 기준 등의 정량적 기준 마련이 아닌 타 법령(점검기준, 안전관리, 지침 등 포함) 등을 참조하고, 학교시설의 성격을 반영한 보완 방향으로의 제시
 - 안전관리 기준의 경우 또한 상기와 같이 항목에 대한 정량적 기준 제시가 아니고, 관련 사항의 판단 기준에 대한 참조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범위를 설정함

그림 1-2 연구의 범위



* 연구범위 :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9) 서울교육청 정보공개 사이트의 2025년 초·중등학교 학교통계(초등학교-609개교, 중학교-390개교, 고등학교-318개교) 기준 (https://www.sen.go.kr/www/information/statistics/statistics_2/statistics_2025.jsp)

- » 본 연구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 » 이를 통해, 서울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업무 및 이관 정책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며,
- » 향후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참조 기준과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에 활용하는 등 선제적 해당 연구를 통해 부대시설 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정 및 보완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부대시설 기준 관련 미비 사항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기초자료 제시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기초자료 제시
- » 나아가, 학교 복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선제적 설치·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성 강화를 통한 일선 교육청 차원의 정책 신뢰성 강화와 학생 및 이용자 대상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 ① 학교수영장 현황 분석
- ② 부속시설, 부대시설 현황 분석
- ③ 현장 사례조사



1 학교수영장 현황 분석

가.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

- ▶▶ 수영장, 체육시설 등 학교에 설치되는 다양한 복합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시설 등의 이용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등에 기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활성화 정책을 배경으로 함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이에 따라 2001년 서울금호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수영장 및 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되며 현재까지 서울교육청 관내 총 48개교에서 학교수영장이 운영 중에 있음¹⁰⁾
- ▶▶ 또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¹¹⁾을 통해 2026년 현재 중랑구(2027년 준공 예정), 도봉구(2027년), 영등포구(2028년)에 각 1개의 학교수영장이 건립 중에 있음¹²⁾
- ▶▶ 학교수영장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며 교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 학교수영장의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은 학교 직영, 위탁 운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운영 방법에 따라 시설관리 및 이용 형태에도 차이가 존재함

10)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조사 결과(알림용)

11)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23.3)에 따라 5년간('23~'27)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를 공모, 선정하는 사업을 의미함. 사업대상은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일체이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주차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의미함(출처: <https://www.edum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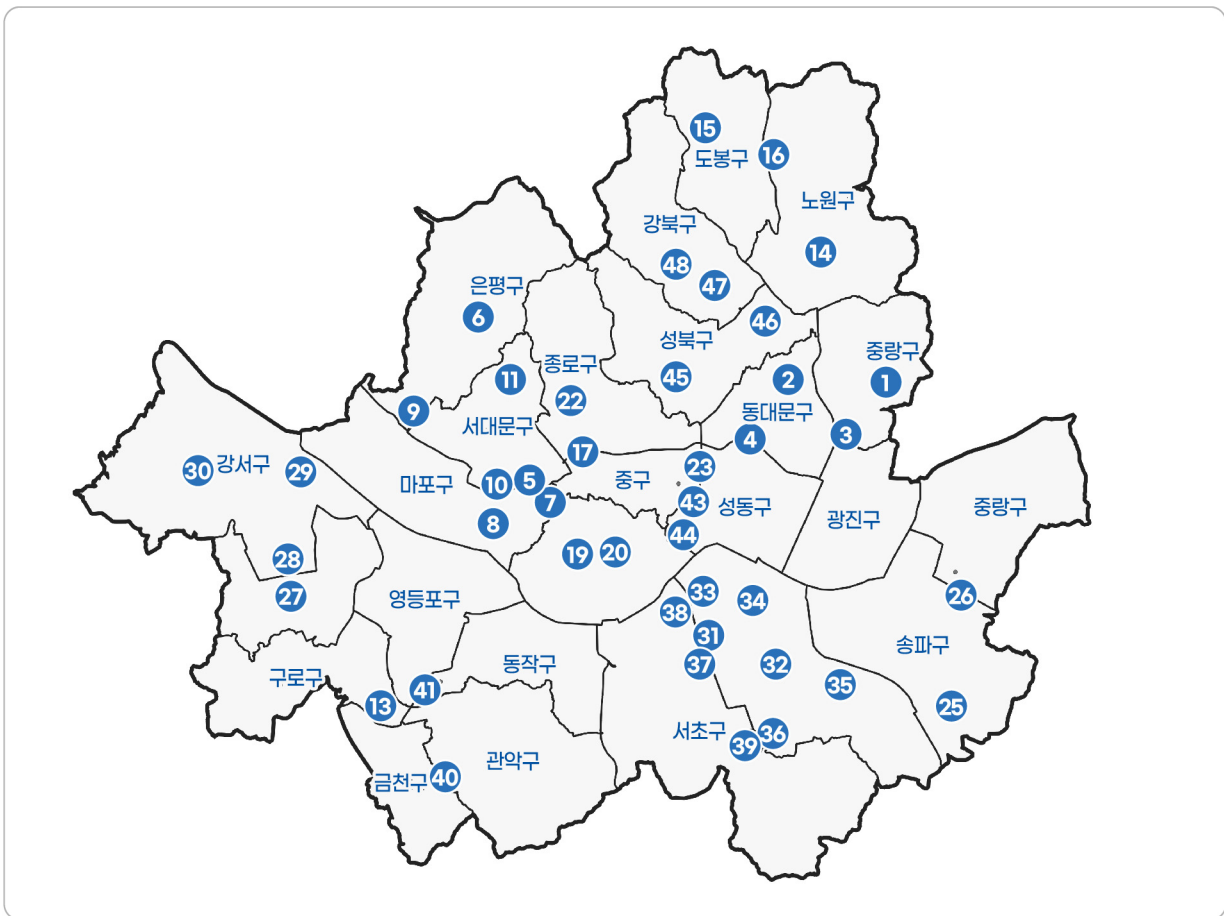
12)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 p.17.

표 II-1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현황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1	서울면일초등학교	17	서울덕수초등학교	33	서울신구초등학교
2	서울전곡초등학교	18	서울봉래초등학교	34	서울언북초등학교
3	서울중곡초등학교	19	서울용산초등학교	35	서울영희초등학교
4	송인중학교	20	서울이태원초등학교	36	서울포이초등학교
5	서울북성초등학교	21	서울청구초등학교	37	서일중학교
6	서울불광초등학교	22	서울청운초등학교	38	신동중학교
7	서울소의초등학교	23	성동고등학교	39	언남고등학교
8	서울신석초등학교	24	서울성일초등학교	40	서울난향초등학교
9	서울증산초등학교	25	문정고등학교	41	서울조원초등학교
10	서울창천초등학교	26	서울체육고등학교	42	수도여자고등학교
11	서울홍제초등학교	27	서울신기초등학교	43	서울금호초등학교
12	아현중학교	28	서울신정초등학교	44	서울옥정초등학교
13	서울구로남초등학교	29	경서중학교	45	서울돈암초등학교
14	서울연춘초등학교	30	공항중학교	46	서울장위초등학교
15	서울초당초등학교	31	서울논현초등학교	47	서울화계초등학교
16	상경중학교	32	서울도곡초등학교	48	혜화여자고등학교

※ 출처: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조사 결과(알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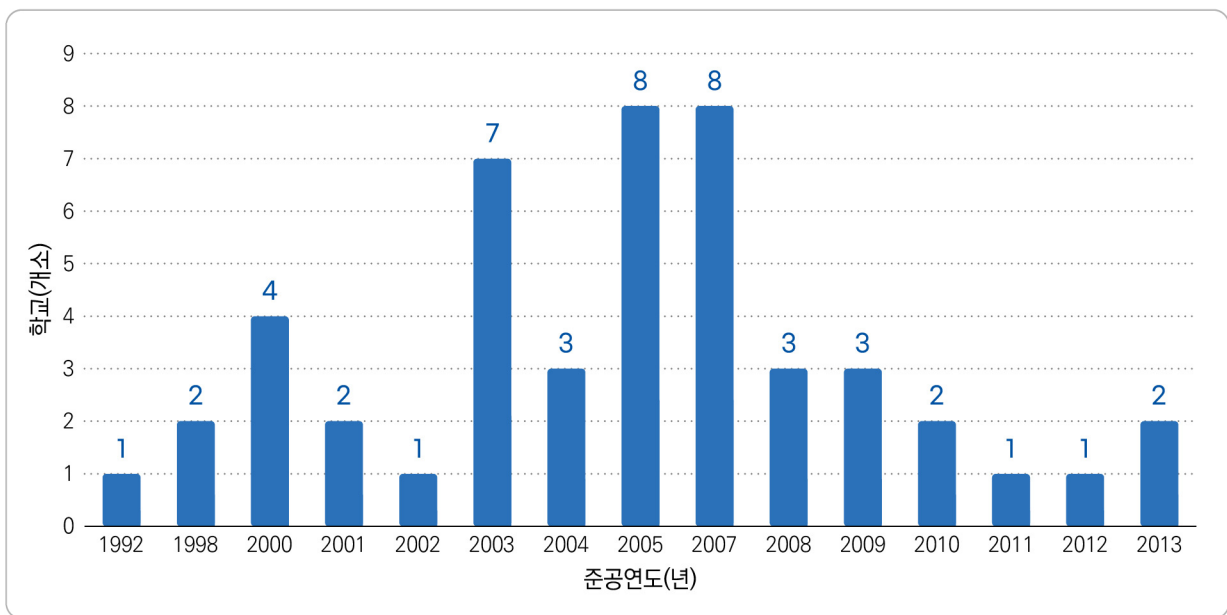
그림 II-1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현황



나. 준공연도별 현황

- ▶ 학교수영장은 1992년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준공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48개교가 설치, 운영 중이며, 특히 2003년, 2005년, 2006년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준공됨
- ▶ 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 시설이 집중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2026년 기준 다수의 시설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진입하여¹³⁾ 향후 시설의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 이에 따라 시설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유지관리 전략 수립과 함께 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성능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특히 초기 조성된 시설은 현행 기준 대비 설비 및 부대시설 성능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법령 및 기준에 기반한 점검체계 구축과 단계적 개선 기준 마련이 요구됨

그림 II-2 학교수영장 준공 현황



13)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시설개선 기준단가 및 관리체계 개선(안), p.5

다. 지역별 현황

- ▶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은 자치구별로 1~2개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서울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입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 반면 강남구, 마포구,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학교수영장이 분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특정 권역에 집중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분석됨
- ▶ 이처럼 학교수영장이 서울 전역에 분산되어 있음에도 현재 시설별로 개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주체와 운영여건에 따라 시설관리 수준 및 안전관리 체계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따라서 지역별, 시설별 관리 편차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시설의 운영 및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관리·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함

표 II-2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구/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계	
	부대	중대	마포	서대문	이태원	구로	금천	영등포	노원	도봉	용산	종로	중구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초	1	2	3	2	2	1			1	1	2	1	3	1		1	1	6			2	2		2	1	35
중	1		1						1							2			2							7
고												1		2				1	1					1		6
계	2	2	4	2	2	1			2	1	2	1	4	1	2	3	1	6	3	1	2	2		2	2	48

※ 출처: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조사 결과(알림용), p.2

라. 운영주체별 현황

- ▶ 서울교육청 관내 48개소 학교수영장은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에 따라 [표 II-3]과 같이 구분됨
- ▶ 관리주체는 학교(사용허가 등), 구청(공단), 교육시설관리본부로 구분되며, 각 주체별 관리 범위와 운영 책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
- ▶ 학교가 직접 사용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학교수영장은 총 42개교로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의 약 87.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 구청 또는 공단이 관리하는 학교수영장은 총 4개교(서울금호초등학교, 서울옥정초등학교, 언남고등학교, 서울이태원초등학교)가 있음
 - 서울금호초등학교는 성동구청 산하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이태원초등학교는 용산구청 산하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시범운영을 시작함(2025.9.29.)¹⁴⁾
 - 해당 시설은 학교가 아닌 외부 공공기관이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는 형태로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및 복합시설 활용 측면에서 운영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된 학교수영장은 총 2개교(수도여자고등학교, 서울신석초등학교)가 있음(2026년 5월 기준)
 - 이는 학교수영장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교육청 차원의 전문 관리체제로 전환한 사례임
 - 학교가 직접 수행하던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적 관리기관이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4)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 p.286

표 11-3 학교수영장 현황(운영관리 주체별)

				(단위: 개교)
구분	학교(사용허가 등)	구청(공단)	교육시설관리본부	계
계	42	4 (금호초·옥정초·언남고·이태원초)	2 (수도여고·신석초)	48

※ 출처: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조사 결과(알림용), p.2 참조
현시점('26. 5. 기준) 일부 재구성

마. 교육시설관리본부 운영 현황

- ▶▶ 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023.3.17.) 정책 시행¹⁵⁾과 함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의 경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수영장의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관리본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¹⁶⁾
- ▶▶ 서울교육청의 학교수영장 이관 추진 배경은 학교 현장에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행정적, 관리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영장과 함께 운영되는 다양한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에 따름
 - 학교수영장과 함께 운영되는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법령상 명확한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존재
 - 사용허가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제기
- ▶▶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학교수영장 시범운영 대상학교 선정 조건은 아래와 같음¹⁷⁾
 - 기존 허가업체의 퇴거가 완료(직영인 경우 직원 고용관계까지 최종 종료·퇴직)되어 수영장이 미개장(미운영) 상태인 경우
 - 기존 허가업체·직원과 사용허가(갱신)조건 및 근로·퇴직조건 등 전반에 대해 향후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수영장에 대한 대수선·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시설·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 ▶▶ 현재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학교수영장 시범운영 대상학교는 수도여자고등학교와 서울신석초등학교 총 2개교임
- ▶▶ 이처럼 학교수영장 운영의 전담기관 이관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수영장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이며 다양한 부대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시설 구조와 운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 따라서, 학교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기능적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15) 교육부(2023),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안)

16)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 p.207

17)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 p.208

» 본 연구에서의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함

- 부속시설: 부대시설과는 구분하여 학교수영장의 시설 구성 시 설정된 시설(수영장의 부대시설을 포함)을 통칭하는 용어로 기술함
- 부대시설: 학교시설 복합화 성격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각종 체육시설, 문화강좌실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기술함

가. 부속시설(부대시설 포함) 설치 현황

»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의 부속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 구성은 운영·관리시설, 이용자 위생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체육시설, 부대서비스시설, 기계·설비시설, 공용시설, 안전·의료시설로 구분됨

- **운영·관리시설**: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이용자 응대 및 시설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
- **이용자 위생시설**: 이용자의 탈의, 세정,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위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 **이용자 편의시설**: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의 제공을 통해 쾌적한 시설 이용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 **체육시설**: 체육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 **부대서비스시설**: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음식·물품 판매 및 휴식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 **기계·설비시설**: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전기, 설비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공간
- **공용시설**: 시설 내 이동, 접근 및 공간 간 연결을 지원하는 공용 공간
- **안전·의료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 및 안전관리 공간

표 II-4 부속시설(부대시설 포함)

번호	유형	상세 시설
1	운영·관리시설	• 사무실, 관리실, 안내실, 접수대, 카운터 • 강사실, 강사대기실, 코치실, 회의실 • 관제실, 중앙감시실, 방송실, 기구창고
2	이용자 위생시설	•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락커실
3	이용자 편의시설	• 휴게실, 이용자 휴게공간, 수유실, 세탁실
4	체육시설	• 헬스장, 체력단련실, 웨이트장 • GX룸, 에어로빅실, 요가실, 필라테스실 • 태권도장, 농구장, 골프연습장, 축구장 • 다목적홀, 소체육관
5	부대서비스시설	• 매점, 식당, 조리실, 판매실, 사우나 • 문화강좌실, 관망대, 전망대
6	기계·설비시설	•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공조실 • 수처리실, 기관실, 자재실,
7	공용시설	• 계단, 복도, 전실, 출입구, 로비, 홀 • 주차장, 승강기, 방풍실
8	안전·의료시설	• 의무실, 응급실, 응급처치실, 안전관리실, 안전요원실

※ 출처: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조사 결과(알림용), p.7~9(붙임: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48개소에 대한 부속시설 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표 II-5]

- 학교수영장 부속시설 중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이용자 위생시설과 기계실 등 기계·설비시설은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수영장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확보되어 있음
- 운영·관리시설의 경우 사무실, 접수대, 강사실 등 기본적인 관리공간은 대부분 확보되어 있으나, 강사대기실·관제실 등 전문 관리시설은 일부 시설에 한정됨
- **체육시설**은 헬스장, GX룸, 에어로빅실, 필라테스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일부 학교에서는 골프연습장, 태권도장, 다목적홀 등 복합 체육시설 형태로 확장 운영되고 있음
- 이용자 편의시설(휴게실, 이용자 휴게공간 등)은 일부 학교에 선택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간 편의공간 확보 수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매점, 식당, 사우나, 문화강좌실 등 부대서비스시설은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 및 운영 형태에서 학교별 차이가 존재함
- 주차장, 복도, 로비 등의 공용시설은 시설 규모, 동선 구조 및 타 시설과의 연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이용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의무실, 응급처치실 등의 안전·의료시설은 일부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사용자의 안전관리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
- 다만, 학교시설과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함에 따른 시설 공유 등(예시: AED)에서의 해석 차이를 가짐
- 종합적으로 학교수영장 부속시설은 기본 운영·위생·설비시설 중심으로 구성되며, 편의·서비스·안전시설은 선택적으로 도입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임

표 II-5 학교수영장 부속시설(부대시설 포함)

학교 구분	운영관리 시설	이용자 위생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체육교육 시설	부대서비스 시설	설비기술 시설	공용 시설	안전의료 시설
면일초	• 사무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GX룸 • 헬스장				
전곡초	• 접수대 • 직원휴게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헬스장 • 에어로빅실 • 필라테스실	• 매점	• 기계실 • 수처리실	• 주차장	
중곡초	• 사무실 • 접수대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이용자 휴게공간	• 체력단련실		• 기계실		
송인중	• 사무실 • 접수대 • 강사대기실 • 창고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락커실	• 이용자 휴게공간	• 헬스장		• 기계실	• 주차장	
북성초	• 숙직실	• 탈의실 • 샤워실	• 휴게실	• 축구장 • 골프장 • 태권도장 • 농구장 • 방송댄스실	• 매점 • 사우나 • 식당 • 조리실			
불광초	• 사무실 • 강사실 • 접수대	• 탈의실 • 샤워실	• 휴게실	• 체력단련실 • 그룹수업실		• 기계실		

학교 구분	운영관리 시설	이용자 위생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체육교육 시설	부대서비스 시설	설비기술 시설	공용 시설	안전의료 시설
소의초	•카운터	•탈의실		•체력단련실 •GX룸			•계단실	
신석초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기계실	•계단실	
증산초	•사무실 •강사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헬스장		•기계실 •수처리실	•계단 •홀	
창천초	•코치실 •창고 •강사실 •방송실 •사무실 •코치 •안내 •창고 •전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헬스장 •에어로빅실			•홀 •계단	•의무실
흥제초	•강사실 •기구창고 •창고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헬스실 •GX룸	•매점	•기계실	•출입구 •복도 •주차장	
아현중	•안내 데스크	•탈의실 •샤워실		•헬스장		•기계실	•로비	
구로남초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헬스장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주계단	
연촌초	•강사대기실 •접수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이용자 휴게공간	•체력 단련실		•보일러실		
초당초	•강사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수처리실 •전기실	•주차장 •계단실	
상경중	•사무실 •접수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이용자 휴게공간			•기계실		
덕수초	•안내실 •창고 •강사대기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기계실	•방풍실	•응급처치실
봉래초	•접수대 •강사대기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락커실		•헬스장 •GX실	•매점	•기계실		
용산초	•접수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기계실		

학교 구분	운영관리 시설	이용자 위생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체육교육 시설	부대서비스 시설	설비기술 시설	공용 시설	안전의료 시설
이태원초	• 사무실 • 접수대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이용자 휴게공간	• 필라테스실 • GX룸		• 기계실	• 주차장	
청구초	• 접수대 • 사무실 • 강사대기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이용자 휴게공간	• 헬스장		• 기계실 • 수처리실	• 주차장 • 승강기	
청운초	• 접수대	• 탈의실 • 샤워실		• 헬스장 • 골프 강의실		• 기계실	• 주차장	
성동고	• 사무실 • 안내실 • 직원휴게실	• 탈의실 • 샤워실 • 락커실		• 헬스장 • 웨이트 트레이닝장 • 요가실 • 다목적홀		• 기계실	• 주차장	• 안전관리실
성일초	• 사무실 • 접수대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이용자 휴게공간	• 헬스장	• 전망대 매점	• 기계실		• 의무실
문정고	• 사무실 • 접수대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세탁실	• 이용자 휴게공간	• 에어로빅실 • 헬스실		• 기계실	• 주차장	
서울체고								
신기초	• 사무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기계실	• 홀	
신정초	• 접수대 • 사무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헬스장 • 골프연습장		• 기계실		
경서중	• 접수대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기계실		
공항중	• 안내 데스크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이용자 휴게공간			• 기계실		
논현초	• 데스크 • 접수대 • 사무실	• 탈의실 • 샤워실		• 헬스장 • GX룸 • 요가룸		• 기계실		
도곡초	• 사무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헬스장	• 문화강좌실	• 기계실		
신구초	• 사무실 • 접수대 • 창고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락커실	• 이용자 휴게공간	• 헬스장		• 기계실 • 전기실		

학교 구분	운영관리 시설	이용자 위생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체육교육 시설	부대서비스 시설	설비기술 시설	공용 시설	안전의료 시설
연북초	• 사무실 • 접수대 • 창고 • 강사대기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이용자 휴게공간	• 헬스장	• 수영용품 판매점	• 기계실 • 전기실		
영희초	• 사무실 • 관리실 • 휴게실 • 창고	• 탈의실 • 샤워실		• 체력 단련실 • 운동시설	• 매점 • 문화교실			• 의무실
포이초	• 사무실 • 접수대	• 탈의실 • 샤워실	• 이용자 휴게공간	• 헬스장	• 문화강좌실	• 기계실		
서일중	• 사무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헬스장 • 요가실 • GX룸	• 관망대 • 사우나실	• 기계실	• 주차장 • 로비	
신동중	• 기구창고 • 관리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헬스장 • 에어로빅장	• 목우방 (다목적강당)	• 기계실	• 주차장 (외부)	• 안전요원실 • 응급실
연남고	• 접수대 • 사무실	• 탈의실 • 샤워장		• 헬스장 • 에어로빅실 • 태권도 • 필라테스 • 골프연습장	• 식당 • 문화강좌실	• 기계실	• 주차장 (지하)	
난향초	• 접수대 • 강사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이용자 휴게공간			• 기계실	• 주차장	
조원초		• 탈의실 • 샤워실			• 사우나실	• 기계실	• 계단 • 복도 • 주차장	
수도여고	• 사무실 • 강사대기실 • 창고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기계실		• 안정실
금호초	• 사무실	• 탈의실 • 샤워실 • 화장실	• 수유실	• 소강당 • 헬스장 • 소체육관 • 에어로빅실 • 유아체능단 교실	• 문화강좌실 • 피아노교실	• 기계실 • 전기실 • 보일러실	• 로비	
옥정초	• 샤워장 • 사물함 • 직원휴게실 • 자재실 • 관제실 • 사무실 • 강사대기실 • 안내데스크 • 회의실 • 강사실	• 탈의실 • 샤워장 • 화장실	• 이용자 휴게공간	• 헬스장 • 골프연습장 • 스크린 골프장		• 기계실 • 전기실	•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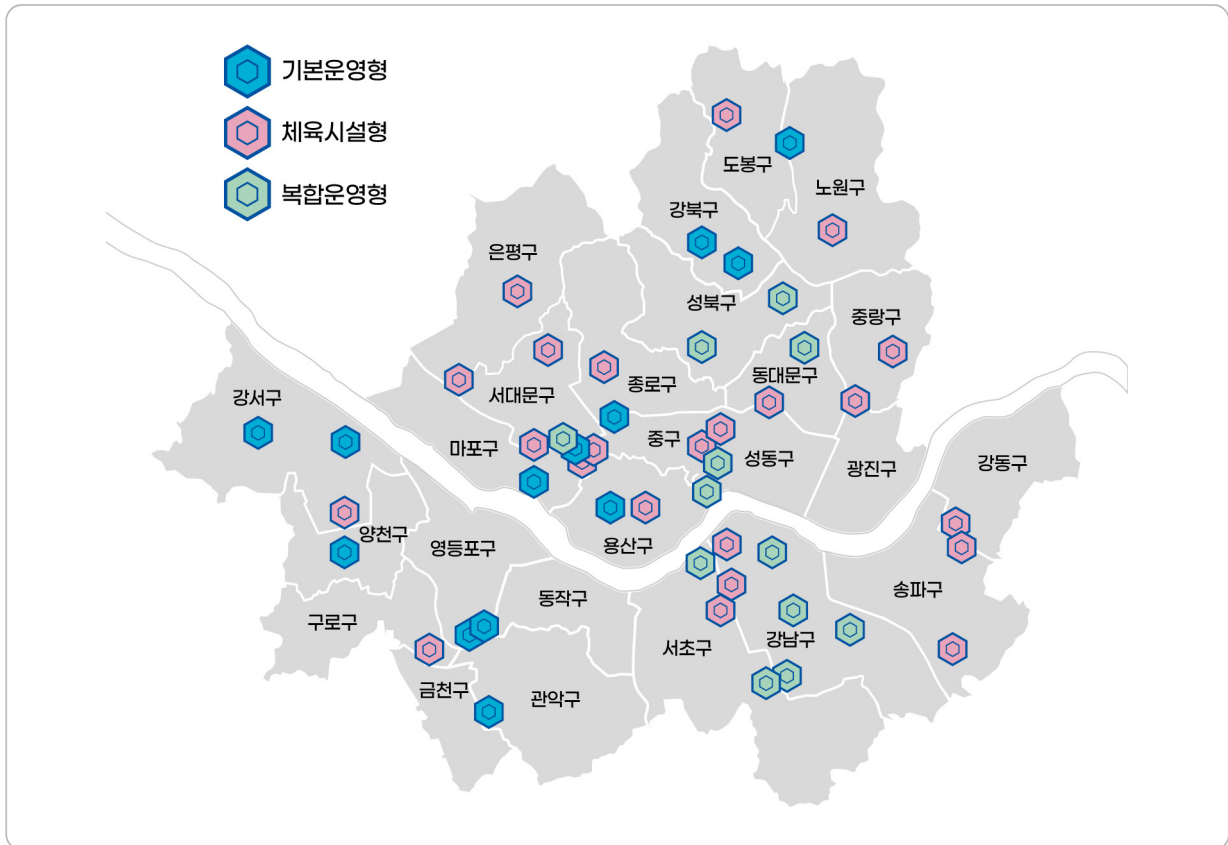
학교 구분	운영관리 시설	이용자 위생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체육교육 시설	부대서비스 시설	설비기술 시설	공용 시설	안전의료 시설
돈암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헬스장 에어로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실 (공조실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단실 홀 	
장위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접수대 중앙감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헬스장 에어로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나실 매점 			
화계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실 강사대기실 접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휴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 주차장 	
혜화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강사대기실) 접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실 수처리실 전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 출처: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조사 결과(알림용), p.7~9(붙임: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를 참고하여 작성

나. 부대시설 기능별 분류

- ▶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은 부대시설 구성에 따라 기본운영형, 체육시설형, 복합운영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각 유형은 부대시설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기본운영형 → 체육시설형 → 복합운영형으로 갈수록 시설 기능과 운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살펴짐
 - 기본운영형: 수영장과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 중심으로 구성된 형태로 수영장 외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은 최소화된 형태
 - 체육시설형: 헬스장, GX룸 등 체육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수영장 이용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형태
 - 복합운영형: 체육시설 외 매점, 사우나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되고 이용자 서비스 기능과 문화센터, 문화강좌 등의 복합 운영 기능이 추가된 형태
- ▶ 서울교육청 48개소 학교수영장을 대상으로 유형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체육시설형이 27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본운영형 12개소, 복합운영형 9개소로 나타남
- ▶ 동일한 학교수영장이라 하더라도 부대시설 구성과 운영 목적에 따라 시설 기능, 이용 형태, 관리 범위 및 안전관리 요구 수준이 상이하며, 특히 체육시설형과 복합운영형은 단일 수영시설을 넘어 복합체육시설의 성격을 가짐
- ▶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학교수영장이 부대시설 구성에 따라 이용 형태와 관리 특성이 상이한 복합시설임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부대시설 구성 특성과 운영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살펴짐

그림 11-3 운영 유형별 구분



가.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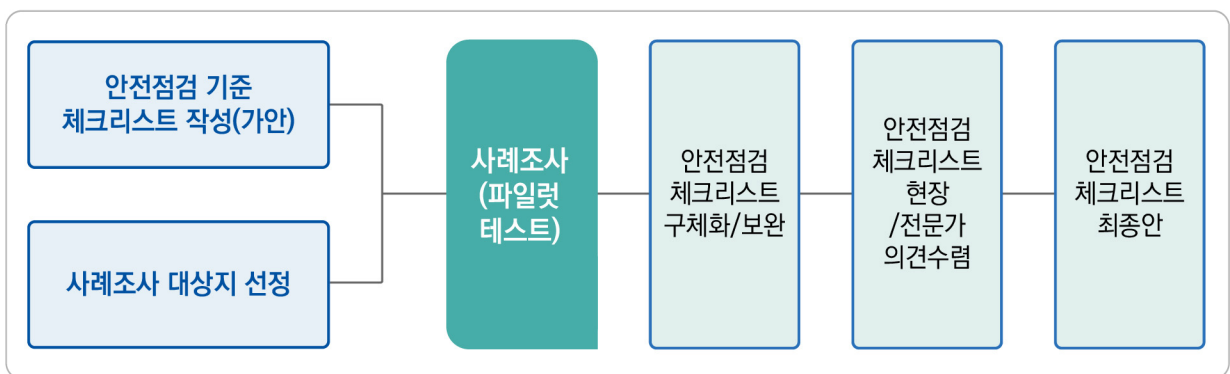
- ▶ 서울교육청 학교수영장의 운영방식 및 부대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수영장 사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지는 운영주체(직영, 지자체 위탁, 민간 위탁), 부대시설 유형(기본운영형, 체육시설형, 복합운영형), 노후도, 미 사용허가시설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선정함
- ▶ 대상은 [표 II-6]과 같음

표 II-6 현장조사 대상 시설

번호	학교	준공연도	운영방식	부대시설유형	현장조사
1	언남고등학교(서초구)	2006	구청	복합운영형	2026.4.8.
2	서울체육고등학교(송파구)	2007	직영	-	
3	서울이태원초등학교(용산구)	2007	구청	체육시설형	2026.4.10.
4	서울옥정초등학교(성동구)	2008	구청	체육시설형	
5	서울금호초등학교(성동구)	2001	구청	복합운영형	
6	서울홍제초등학교(서대문구)	2006	사용허가(학교)	체육시설형	2026.4.13.

- ▶ 현장조사를 통해 각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세한 점검과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며 세부 절차는 [표 II-3]과 같음
 - 안전점검 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안) 작성
 - 사례조사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가안)에 대한 파일럿테스트 진행

그림 II-4 현장 사례조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절차



- ▶ 부대시설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초안)의 구성은 공통사항, 건축(통신, 외부(조경/토목) 포함), 기계/설비, 전기, 소방, 가스, 위생 분야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통사항) 시설 기본현황, 운영 및 이용현황, 시설 설치현황 등
 - (건축) 시설안전(구조부, 비구조요소, 창호, 외부(조경/토목) 포함 등), 생활안전 등(출입문, 마감재, 통신(비상벨, 불법촬영기기 등) 포함) 등

- (기계) 수처리, 공기조화설비, 위생급탕설비, 승강기, 신재생에너지 등
- (소방) 화재예방, 감지기, 소화기, 피난안내도 등
- (전기) 화재예방, 분전반, 콘센트 등
- (가스) 화재예방, 기기설비, 배관 등
- (위생) 공기질, 수질검사 등

▶▶ 부대시설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11-5 건축분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예시)

분류	항목	내용	비고	확인사항				특이사항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시설안전 (B-1)	안전점검 실시 (B-1-1)	a)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기에 맞춰 적정하게 실시 하고있는가	2025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시설물 분야 안전점검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요구조부 안전 확보 (B-1-2)	a) 균열, 누수, 침수, 팽창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둥, 보, 바닥, 벽, 처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콘크리트 탈락, 절근 노출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둥, 보, 바닥, 벽, 처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 절골재 접합부의 볼트 누락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기둥, 보, 바닥, 벽, 처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 절골재 부식, 도장 탈락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기둥, 보, 바닥, 벽, 처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e) 절골재(보, 바닥 등)의 휨, 처짐, 변형 등의 손상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기둥, 보, 바닥, 벽, 처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구조요소의 내진성은 확보 (B-1-3)	a) 천장에 설치되는 장비들의 흔들림, 탈락 등 고정상태가 적정히 유지되고 있는가 (디지털장비(전동 스크린, 반동 볼라임드, 빔 프로젝터 등) 및 산등기, 방-난방기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벽면에 설치되는 장비들의 흔들림, 탈락 등 고정상태가 적정히 유지되고 있는가 (디지털장비(전자칠판 등) 및 스피커, 게시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 마감재의 파손(균열, 탈락), 오염, 누수 및 침수 흔적의 발생 여부 등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닥, 벽(내외부), 천장, 처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호 안전 관리 (B-1-4)	a) 장호(문, 방충망 등)의 안전상태가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장호 유리의 안전상태가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난간 안전 관리 (B-1-5)	a) 난간의 흔들림 및 손상 없이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육상 및 지붕 안전 관리 (B-1-6)	a) 육상 방수, 마감 등 안전상태는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착물 관리 (B-1-7)	a) 광고간판, 조명, 안내 사인물, 광고탑 등의 파손 등 안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용벽, 노후 옥재 안전관리 (B-1-8)	a) 용벽의 균열 또는 파손, 배부름 현상의 안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 지고 있는가		2025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시설물 분야 안전점검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보수, 보강 등의 조치 상태 등이 적정히 이루어 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밀면 안전관리 (B-1-9)	a) 경사면 균열 또는 파손 및 수목의 기울어짐에 대한 안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반 안전 확보 (B-1-10)	a)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대시설 안전관리 (B-1-11)	a) 정문, 무대 시설, 피고라, 배지, 담장 등 시설 결함 상태의 안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 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현장조사 수행 항목으로는 운영관리체계, 시설관리상태, 안전위험관리(시설), 안전위험관리(이용자), 위생환경관리, 장애인 편의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II-7 현장조사 항목

번호	구분	조사항목
1	운영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 일원화 여부 • 위탁운영 시 관리책임 명확성 • 운영매뉴얼 존재여부
2	시설관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노후도 • 유지관리 수준 • 설비작동 상태
3	안전위험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방지(바닥) • 안전시설(난간, 표지 등) • 응급시설(AED, 의무실) • 감시체계(CCTV, 관제) 구비 등
4	안전위험관리(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용 안전수칙 게시 여부 • 안전수칙 가시성 및 위치 적정성 • 안전요원 배치 및 현장 통제 여부 등
5	위생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 샤워실 위생상태 • 환기 및 공기질 상태 • 습기 및 악취 관리
6	장애인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 휠체어 이용 시 접근 가능 여부 • 장애인 이용자 고려한 안전시설(난간 등) 설치 여부 등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영 관리자 면담 및 시설 점검을 통한 운영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 파악
- 시설 이용 특성 및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부대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안) 파일럿테스트

나. 운영 및 관리 실태 사례조사

1) 언남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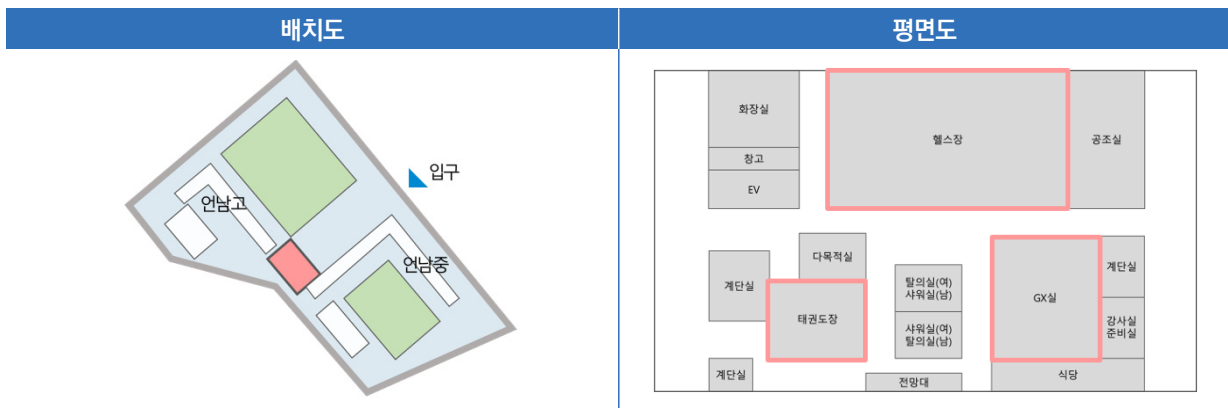
» 서초구에 위치한 언남고등학교의 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I-8 언남고등학교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13길 35		
준공년도	2006년		
연면적	14,317㎡		
사업비	약 185.4억원(교육청: 33억, 구청 152.4억)		
시설현황	층별	시설	관리방식
	지하 2층	수영장, 기계실, 주차장	구청운영
	지하 1층	헬스장, 태권도장, GX실, 전망대, 휴게실, 주차장,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식당, 판매점	
	지상 1층	어린이집	
	지상 2~3층	학교교실	학교운영
	지상 4층	골프연습장	구청운영
지상 5~7층	문화시설		

» 언남고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 배치 및 평면은 다음과 같음

표 II-9 언남고등학교 배치(평면)도



- » 언남고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는 구청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 설비는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 특이사항으로 식당, 태권도장, 필라테스장, 접수대, 사무실, 골프연습장, 기계실, 탈의실, 샤워장이 사용 미허가 시설로 살펴지고 있음

2) 서울체육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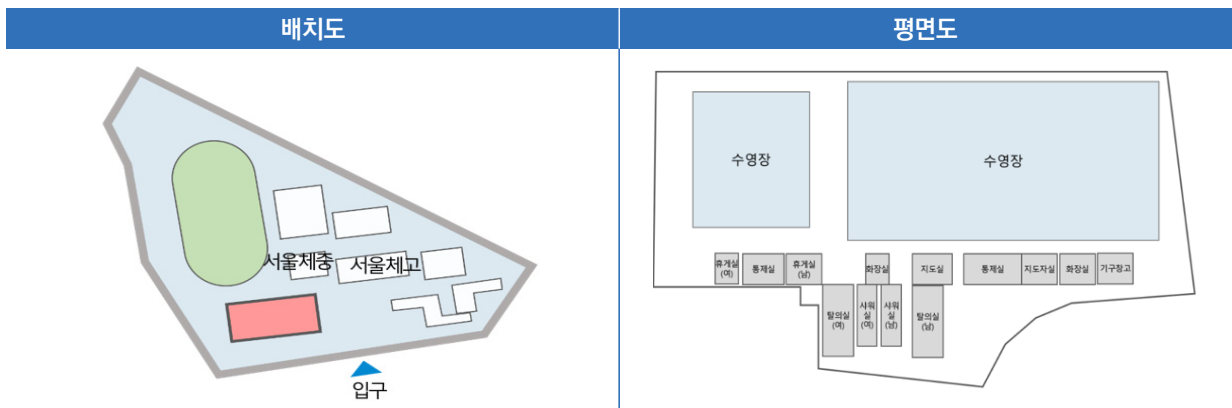
»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체육고등학교의 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I-10 서울체육고등학교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강동대로 232		
준공년도	2007년		
연면적	4,391㎡		
사업비	약 81.2억원(교육청: 81.2억)		
시설현황	층별	시설	관리방식
	지상 1층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지도자실, 관람석	학교운영
	지상 2층	헬스장등	

» 서울체육고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 배치 및 평면은 다음과 같음

표 II-11 서울체육고등학교 배치(평면)도



» 서울체육고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는 학교 성격에 따라 학교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설비는 미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시설의 규모, 구성과 이용자 특성 등이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임

3) 서울이태원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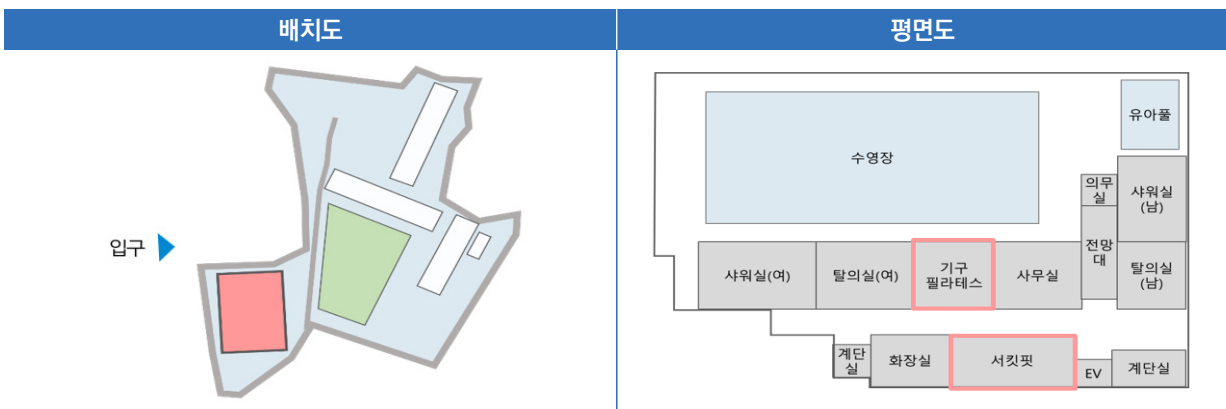
»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이태원초등학교의 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I-12 서울이태원초등학교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주소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19		
준공년도	2007년		
연면적	3,466㎡		
사업비	약 57억원(교육청: 34.5억, 구청 22.5억)		
시설현황	층별	시설	관리방식
	지하 1층	수영장, 서킷핏, 필라테스장	구청운영

» 서울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 배치 및 평면은 다음과 같음

표 II-13 서울이태원초등학교 배치(평면)도



» 서울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는 구청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 설비는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특이사항으로 필라테스실, GX룸,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접수대, 이용자 휴게공간이 사용 미허가 시설로 살펴지고 있음

4) 서울옥정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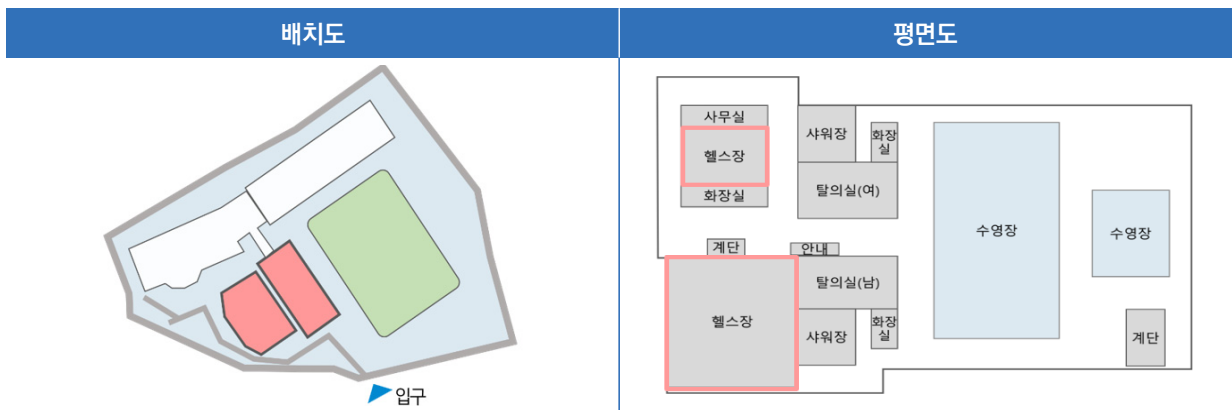
»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옥정초등학교의 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I-14 서울옥정초등학교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길 43		
준공년도	2003년		
연면적	1,298㎡		
사업비	약 20.7억원(교육청: 20.7억)		
시설현황	층별	시설	관리방식
	지상 1층	수영장, 헬스장,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구청운영
	지상 5층	골프장	

» 서울옥정초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 배치 및 평면은 다음과 같음

표 II-15 서울옥정초등학교 배치(평면)도



» 서울옥정초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는 구청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 설비는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특이사항으로 직원휴게실, 전기실, 관제실, 사무실, 화장실, 강사대기실, 탈의실, 안내데크 등이 사용 미허가 시설로 살펴지고 있음

5) 서울금호초등학교


»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금호초등학교의 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I-16 서울금호초등학교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주소	서울시 성동구 무수막길 69		
준공년도	2001년		
연면적	21,919㎡		
사업비	약 114억원(서울시: 55.5억, 구청: 58.5억)		
시설현황	층별	시설	관리방식
	지하층	수영장, 강당, 유아체능단, 관리사무실	구청운영
	지상 1층	헬스장	
	지상 2층	대체육관, 소체육관, 에어로빅실, 문화강좌실, 피아노실, 중앙통제실	

» 서울금호초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 배치 및 평면은 다음 같음

표 II-17 서울금호초등학교 배치(평면)도

배치도	평면도
 <p>입구 ▶</p>	-

» 서울금호초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는 구청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 설비는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특이사항으로 샤워실, 소체육관, 에어로빅실, 유아체능단교실, 피아노교실, 수유실이 사용 미허가 시설로 살펴지고 있음

6) 서울홍제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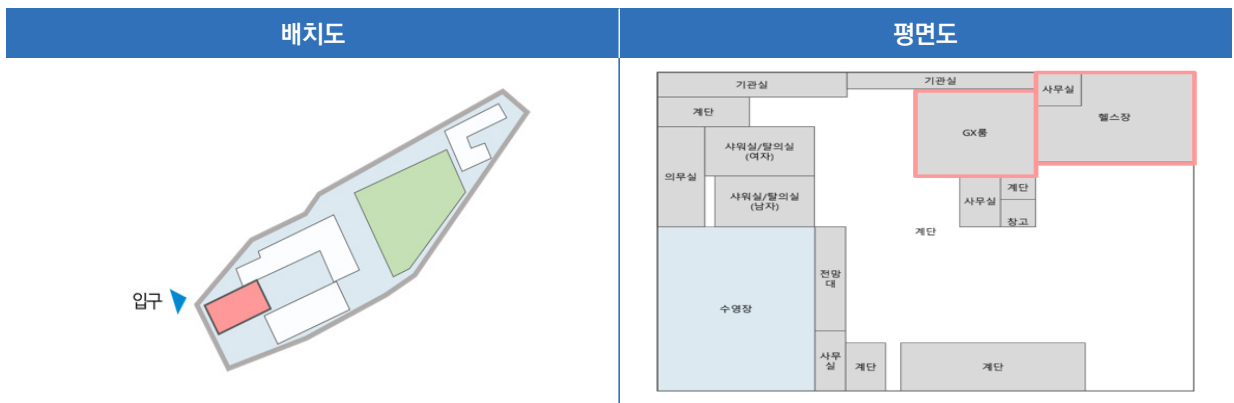
»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홍제초등학교의 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I-18 서울홍제초등학교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3		
준공년도	2006년		
연면적	1,323㎡		
사업비	약 24억원(교육청: 12억, 서울시: 9.6억, 구청: 2.4억)		
시설현황	층별	시설	관리방식
	지하층	수영장, GX룸, 헬스장, 샤워실, 탈의실, 사무실, 전망대, 의무실	사용허가(학교)

» 서울홍제초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 배치 및 평면은 다음과 같음

표 II-19 서울홍제초등학교 배치(평면)도



» 서울홍제초등학교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는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 설비는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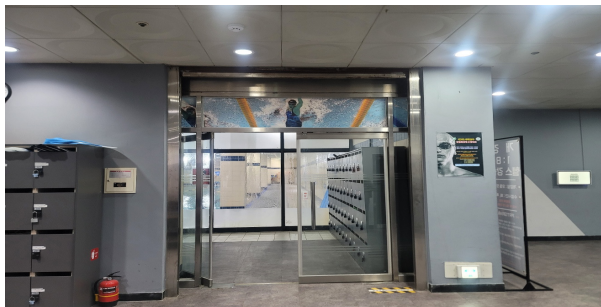
» 특이사항으로 기계실, 주차장이 사용 미허가 시설로 살펴지고 있음

다. 사례조사 시사점

▶ 전남고등학교 등 6개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현장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운영주체별 관리수준 편차 해소를 위한 통합 운영관리 기준 마련
- 화재 등에 대한 시설 구성(피난 등) 및 내부 마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 사용 미허가, 관리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및 점검 체계 강화
-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시설 개선 등 필요

표 11-20 현장 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 요소



(a) 방화셔터 및 유리문 설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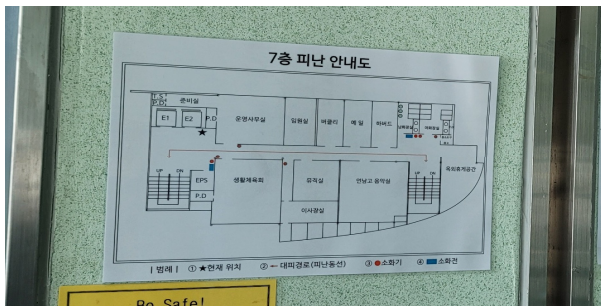
(b) 마감재 및 비구조체 고정 상태



(c) 내부마감재 불연자재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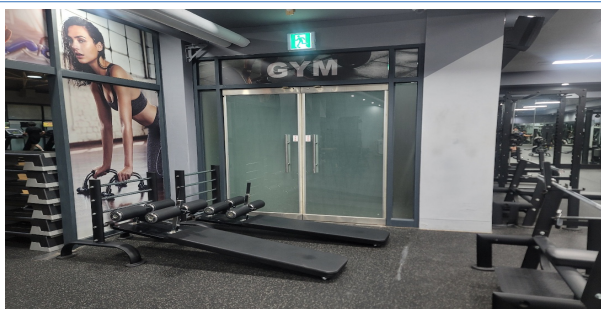
(d) 내부 동선분리의 적정성



(e) 피난안내도 내용 및 적정 부착 위치



(f) 체육기구의 설치 위치 적정성



(g) 각 실별 바닥 마감재 설치 및 체육기구의 설치 위치 적정성



(h) 장애인 편의 등 접근 가능 여부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안전관리 기준 및 사례조사

- ① 문헌조사
- ②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관련 법령 및 용도 분류
- ③ 법령별 설치·안전관리 기준
- ④ 타 기관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사례



1 문헌조사

가.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2023)

- ▶▶ 변경화(2023)¹⁸⁾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법·제도, 연구동향 및 정부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 ▶▶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법·제도 검토
 - 「학교복합시설법」을 중심으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평생교육법」, 「국토계획법」 등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법령을 분석하고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 적용범위 및 제도적 기반을 제시함
- ▶▶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동향 분석
 -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공간계획, 운영관리, 이용자 요구, 안전 문제 등 주요 연구 주제를 검토하였으며,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공간 분리와 학생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제시함
- ▶▶ 정부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생활SOC,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늘봄학교 등과 연계된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이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로 확대되는 정책 흐름을 정리함
- ▶▶ 주요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에 따라 학교 개방으로 인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유지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음
 - 기존 학교시설과 관련한 다수의 복합화 연구는 제도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지며, 다양한 선행 사례 분석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및 향후 제도 개선 필요 사항 기술이 일반적임

18) 변경화(2023),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교육녹색환경연구, Vol.22, No.3, 1-16.

나. 미래학교를 위한 공간재구조화 경향 분석 연구(2025)

- ▶ 손재성 등(2025)¹⁹⁾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시설 복합화가 미래학교의 공간 활용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 ▶ 학교시설 복합화 공급 경향 분석
 - 2023년 이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87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시설과 돌봄시설이 각각 63건(72.4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돌봄시설은 모두 다른 기능과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나타남
- ▶ 학교급별 공간계획 특성 분석
 -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학교복합시설 8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안전성을 고려한 공간 분리형 배치가 적용되었으며, 중·고등학교는 체육관 등과 연결되는 브릿지형 공간 연결 방식이 나타나는 등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공간 연결 전략이 확인됨
- ▶ 복합시설 운영 및 공간 활용 특성 분석
 - 대부분 사례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다층 공간계획이 적용되었으며, 학교와 복합시설 간 MOU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 주요 시사점
 -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간계획과 다기능 복합시설 계획이 중요하며, 교육과정 연계 및 동선계획의 한계가 확인됨에 따라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다. 신도시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 설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2023)

- ▶ 문선민 등(2023)²⁰⁾은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계획 지침과 실제 사용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거주 후 평가(POE)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 설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 ▶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의 공간계획 평가틀 도출
 - 문헌조사를 통해 학교와 커뮤니티 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필요한 건축계획 특성으로 확장성, 전환성, 다기능성, 접근성, 수용성, 안전성, 보안성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틀로 활용함
- ▶ 신도시 복합화 초등학교 사례의 실제 이용 현황 분석
 - 동탄 및 배곧 신도시 소재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이용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복합화 시설과 학교 간 공간 분리, 접근통제, 차량과 학생 동선 혼재, 연결도로 안전 문제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공간적 쟁점이 확인됨
- ▶ 복합화 시설 설계 개선 방향 제시
 - 복합화 시설의 교육공간은 학교 교육과정 활용을 고려한 확장성 확보, 다양한 이용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공간 구성, 이용자 동선과 연계된 휴게·개방공간 계획, 보차분리 및 안전장치 확보, 개방성과 보안성의 균형을 고려한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함
- ▶ 주요 시사점
 -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가 실질적인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복합화 시설간 과도한 물리적 분리를 최소화하고, 실제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안전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제시함

19) 손재성, 서동연(2025), 미래학교를 위한 공간재구조화 경향 분석-학교시설복합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Vol.20, No.6, 113-128.

20) 문선민, 이선영(2023), 신도시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 설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39, No.7, 133-144.

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생활밀착형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2025)

- ▶ 김유진 등(2025)²¹⁾은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계획 지침과 실제 사용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거주 후 평가(POE)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 설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 ▶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의 공간계획 평가 틀 도출
 - 문헌조사를 통해 학교와 커뮤니티 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필요한 건축계획 특성으로 확장성, 전환성, 다기능성, 접근성, 수용성, 안전성, 보안성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틀로 활용함
- ▶ 복합화 시설 설계 개선 방향 제시
 - 복합화 시설의 교육공간은 학교 교육과정 활용을 고려한 확장성 확보, 다양한 이용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공간 구성, 이용자의 동선과 연계된 휴게·개방공간 계획, 보차분리 및 안전장치 확보, 개방성과 보안성의 균형을 고려한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함
- ▶ 주요 시사점
 -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가 실질적인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복합화 시설 간 과도한 물리적 분리를 최소화하고, 실제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안전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제시함
 - 학교 복합시설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점검 기준에 대한 연구는 그 사례가 미비한 것으로 살펴짐에 따라 구체적 연구 접근 방향 및 항목 설정부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시사점

- ▶ 학교수영장과 관련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연구, 복합시설·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관련 연구, 안전 관리·점검 기준 관련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 ▶ 관련 연구들은 시계열적 정책 분석, 개선 방안 제시 등에 대한 다수의 복합시설 관련 연구 대비 부대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 관련 관리·점검 기준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살펴짐에 따라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구체적 기준 제시에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됨
- ▶ 이에, 기존의 미진한 연구 부분의 진행을 통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설치·안전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기존 관리 사각지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및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 확보 관련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살펴짐
- ▶ 또한, 서울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수영장 업무 전담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이관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기반자료를 선행적으로 마련하여,
- ▶ 향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시 참조 가능한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설의 계획 단계부터 지속가능한 운영·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기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1) 김유진, 황연숙(2025),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생활밀착형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34, No.4, 64-71.

가. 소관 법령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교육시설에 설치되는 복합시설로서 시설의 용도, 운영형태, 위생 및 안전관리 특성에 따라 다수의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 관련 법령들은 각각의 시설 개별에 대한 설치, 운영, 위생, 안전 등의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부대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함
- ▶ 이에 따라,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본 장에서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건축법」, 「학교복합시설법」, 「학교보건법」과 함께 설비·소방·위생 관련 개별 법령을 포함하여 부대시설별 적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표 III-1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관련 소관 법령

구분	관련 법령	주요내용
건축	교육시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점검 체계 운영 •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규모, 구조, 면적 및 배치 기준 • 피난·방화, 출입구 등 건축 안전기준 • 건축설비(환기, 채광 등) 기준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배수, 환기, 냉난방 등 건축설비 설치 기준 적용 • 위생설비(화장실, 샤워시설 등) 설치 기준 활용 • 환기 및 공기질 확보를 위한 설비 기준 적용 • 배수 및 오수 처리 등 위생·환경 설비 기준 적용
기계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물 공급 및 급수설비 설치·관리 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 저수조·급수시설의 청소 및 유지관리 기준 등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배수시설 설치 및 처리 기준 • 하수 배출 및 수질 관리 기준 • 배수설비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기준 등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 감지·경보 시스템 기준 • 피난·방화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기준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위험요인 관리 및 예방조치 기준 • 방화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체계 기준 • 화재안전 점검 및 교육·훈련 기준 등

구분	관련 법령	주요내용
전기	전기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체계 기준 등
	전기설비기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전 방지(접지,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 기준 • 습윤·수변 공간 전기설비 설치 기준 • 배선, 절연, 보호장치 등 전기설비 기술 기준 등
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가스안전에 대한 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저장, 배관, 사용 기준 • 사고 예방 점검 기준
안전·위생	체육시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유형별 체육시설 설치, 안전에 대한 기준 등
	학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공기질, 조도, 환기 기준 • 먹는물 및 위생관리 기준 • 학생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유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 접근성 및 이동 편의 확보
	공중위생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기준(잔류염소, 탁도 등) • 위생관리 및 소독 기준 • 목욕장업·위생시설 관리

나. 부대시설 용도 분류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운영 목적과 이용 형태에 따라 「교육시설법」, 「학교보건법」, 「학교체육 진흥법」, 「체육시설법」,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용도로 분류될 수 있음
- ▶▶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적용 법령에 따라 시설의 용도 및 관리 대상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령별 용도 구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과 관련된 법령별 적용 범위와 용도 체계를 조사, 분석하고,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시설의 정의 및 적용 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법적 성격과 관리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 ▶▶ 또한,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이 교육시설이면서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성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법령의 적용과 같은 보수적인 접근에 기초한 용도 분류 및 기준을 살피고자 함

1) 「교육시설법」

- ▶ 「교육시설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시설은 유치원, 학교 및 그에 부속된 시설·설비 등을 의미하며 학생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교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2024. 2. 6.>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 ▶ 이에,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경우 교육시설에 기반을 둔 시설로 살필 수 있음

2) 「학교보건법」

- ▶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은 교사대지, 체육장, 교사·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내 설치되는 강당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의미함
- ▶ 또한, 해당 법에서 학교시설에서는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조절과 유해 물질의 예방·관리, 상하수도 및 화장실의 설치·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아울러 식기·식품·먹는물 등의 위생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수영장 및 부대시설 또한 이용자의 건강과 위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학교체육 진흥법」

- ▶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와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잡힌 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²²⁾
- ▶ 또한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제1항²³⁾ 및 제5항²⁴⁾에 따른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와 같으며, 운동종목별 체육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²⁵⁾
- ▶ 또한 같은 법에서 운동종목별 체육시설뿐 아니라 샤워장, 탈의실 등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도 학교체육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역시 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체육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음

표 III-2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 종류		
운동종목별 시설	1. 골프연습장 2. 궁도장 3.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당구장 6. 라켓볼장 7. 럭비풋볼장 8. 롤러스케이팅장 9. 배구장 10. 배드민턴장 11. 볼링장 12. 빙상장 13. 사격장	14. 세팍타크로장 15. 수영장 16. 스쿼시장 17. 승마장 18. 썰매장 19. 씨름장 20. 아이스하키장 21. 야구장 22. 양궁장 23. 역도장 24. 에어로빅장 25. 요트장 26. 육상장	27. 조정장 28. 체력단련장 29. 체육도장 30. 체조장 31. 축구장 32. 카누장 33. 탁구장 34. 테니스장 35. 펜싱장 36. 하키장 37. 핸드볼장 38. 인공암벽등반장 39.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그 밖의 시설	1. 운동장 2. 체육관	3.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	

※ 출처: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22)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24)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4) 「체육시설법」

- ▶ 「체육시설법」 제2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 정의함

「체육시설법」 제2조제1항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종류를 운동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정하며 구체적인 체육시설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명시하고 있음²⁶⁾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체육시설의 종류)

-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 해당 기준은 골프장, 수영장, 체육도장 등과 같이 운동종목 중심으로 시설 종류를 정의하고,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시설의 구조적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병행하여 제시하고 있음
- ▶ 이러한 분류체계는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과 기능에 따른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별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적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한편, 학교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중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한 이용료를 수반하여 운영되는 경우, 「체육시설법」 제2조제2항²⁷⁾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됨

「체육시설법」 제2조제2항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 또한 같은 법 제10조²⁸⁾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업은 법령에서 정한 업종 구분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됨
- 등록 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등록을 받아야 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함
- 신고 체육시설업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을 의미함

26)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7) 「체육시설법」 제2조제2항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8)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체육시설법」 제10조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 따라서,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로 설치·운영되는 체육시설이 개방되고 상기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다만, 학교수영장의 경우 사용허가 등의 개별 시설 운영 형태 등에 따라 체육시설업 해당 여부 및 업종 구분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시설별 운영 실태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

그림 III-1 체육시설 운영 등에 따른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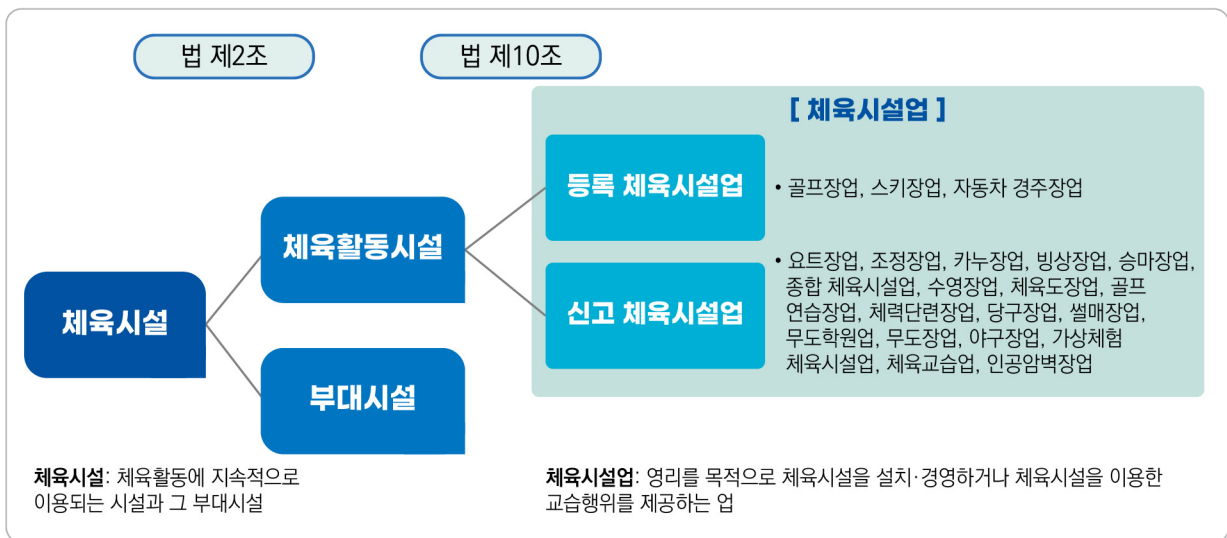


표 III-3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업종	영업의 범위
종합 체육시설업	•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 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체육도장업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 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업종	영업의 범위
체육교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팅(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팅을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5) 「건축법」

- »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수영장 및 부대시설은 건축법 상 '교육연구시설' 또는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속함

「건축법」 제2조제2항(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이란 학교, 교육원, 연구소 등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지칭하며, 이에 따라 학교 내 설치되는 수영장 및 부대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부속된 시설로서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업(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운동시설’이란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과 함께 수영장이 포함되며 일정 규모의 시설은 운동시설로 분류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 ‘근린생활시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의미함
 - 근린생활시설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음식점, 상점, 학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을 포함함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주민의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시설로서,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등 생활체육 중심의 시설이 포함되며,
 - 이러한 시설은 일정 규모(500㎡ 미만) 이하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대규모 체육활동이나 경기 운영보다는 생활밀착형 이용을 전제로 한 체육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은 전용 운동공간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되며, 헬스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은 이용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
- ▶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은 이용 대상과 영업 규모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며, 학교 내 소규모 시설은 일반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
- ▶ 탈의실, 샤워실, 기계실 등은 주된 시설의 기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건축법상 부속시설로 판단됨
- ▶ 사무실, 관리실 등 운영관리시설은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부속 용도로 분류되며, 주차장은 별도의 자동차 관련 시설로 구분됨

6) 「다중이용업소법」

- ▶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²⁹⁾

29) 「다중이용업소법」 제1조(목적)

-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업'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함³⁰⁾(표 Ⅲ-5)
 - 다중이용업은 크게 음식·판매시설, 문화·여가시설, 교육시설, 위생·숙박시설, 체육·오락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이용 형태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Ⅲ-4 다중이용업 종류 및 적용기준

구분	대상 영업	적용 기준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 면적 기준 없이 해당
공유주방	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용 공유주방	•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
영화·영상시설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해당 시 적용
학원	일반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중규모 학원	•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면서 기숙사 병설, 동일 건물 내 다수 학원, 또는 다른 다중이용업과 복합 입점
목욕장업	찜질방형 목욕장	• 수용인원 100명 이상
	특수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상 특수시설 해당 시
게임시설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해당 시 적용
음악시설	노래연습장업	• 해당 시 적용
보건시설	산후조리업	• 해당 시 적용
숙박형 시설	고시원업	• 해당 시 적용
체육시설	실내 권축사격장	• 해당 시 적용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장 구축실 운영형)	• 해당 시 적용
의료시설	안마시술소	• 해당 시 적용
기타	불특정다수 출입 영업	• 화재위험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
〈제외〉	제외조건	
공동	•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 영업 제외	
음식점·공유주방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게임시설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출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30)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정의)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다.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법령상 용도

- ▶ 학교수영장 및 부대시설은 단일 법령이 아닌 「건축법」, 「체육시설법」, 「공중위생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복수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시설로 시설의 기능과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상이함
- ▶ 학교수영장은 「건축법」상 운동시설에 해당하며,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기준과 안전·위생관리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시설임
- ▶ 부대시설인 헬스장, GX룸, 태권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은 동일하게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더라도 시설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따라 「건축법」상 운동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체육시설법」상 업종 구분도 상이하여 시설별 설치기준에 대해 개별적 검토가 필요함
- ▶ 스크린골프장은 일반 체육시설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화재안전, 피난관리, 소방시설 확보 등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 검토가 요구됨
- ▶ 탈의실, 샤워실 등의 위생시설은 수영장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이면서 동시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단순 공간 확보를 넘어 청결 유지, 환기, 수질·위생관리 등 운영관리 기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체온관리실, 매점, 식당, 판매대여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은 법령상 필수시설과 임의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용자 편의 증진 기능뿐 아니라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인허가 및 안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사무실, 관리실, 기계실 등의 운영·설비시설은 이용자 서비스 공간이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 공간이지만 학교수영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설비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표 III-5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관련 법령 체계

시설구분	부대시설	건축법*	체육시설법**	공중위생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본시설	수영장	운동시설		수영장업	위생관리대상
체육시설	헬스장	운동시설 (500㎡ 이상)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신고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GX룸			-	
	축구장			-	
	태권도장			체육도장업	
	농구장			-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업	
	스크린골프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다중이용업
	체육도장			체육도장업	
	에어로빅장			-	
	요가실			-	
필라테스실	-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	부속시설	필수시설	편의시설	위생관리대상
	체온관리실	근린생활시설	임의시설	편의시설	
운영시설	사무실, 관리실	업무시설	필수시설	관리시설	
설비시설	기계실 등	부속시설	필수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매점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임의시설	편의시설	
	식당				
	판매대여점	-	임의시설	편의시설	
	휴게실	부속시설	필수시설	관리시설	
	관람석	부속시설	임의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	필수시설	편의시설	

가. 「체육시설법」

1) 공통 설치기준

- ▶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³¹⁾
-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준을 공통기준과 체육시설 종류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³²⁾
- ▶ 공통기준은 체육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치 기준으로 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성, 위생성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
 - 시설 구조, 동선, 위생, 설비 및 안전관리 등 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설치 및 운영 요건을 포괄적으로 제시
 -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 운영의 최소 수준을 규정하는 수준으로 제시
- ▶ 또한, 「체육시설법」 제3조³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되는 체육시설업 종류별 설치 기준을 제시
 -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한 시설별 설치기준을 제시함

표 III-6 체육시설 설치 기준(공통)

항 목	시 설 기 준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함(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을 갖추어야함(단,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업의 경우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음)(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필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제외) 내 조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 기준*에 맞아야 함 * KS A 3011(조도기준): 시설 인공 조명의 조도 기준 규정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함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
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체육시설업)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31) 「체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33) 「체육시설법」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항 목		시 설 기 준
임의시설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 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맞아야 함

※ 출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시설별 설치기준

가) 수영장 설치기준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수영장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수영조의 수심, 벽면 표시, 바닥 구조 등 구조적 안전 기준
- 이용자의 이동 편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통로 및 동선 기준
- 도약대 설치 구간의 수심 및 구조 등 고위험 시설 안전 기준
- 수질 관리를 위한 순환여과 및 배관 시스템 기준
- 감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표 III-7 설치 기준(수영장)

항 목		기 준
수영조	수심	• 0.9m 이상 ~ 2.7m 이하로 설치 (단, 어린이용, 경기용은 예외 가능)
	벽면	• 수심 및 거리 표시를 설치
바닥구조	수영조 및 주변 바닥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사용
	수영조 주변 통로	• 폭 1.2m 이상 확보
	통로	• 물이 수영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외부방향 경사 필요
도약대 (다이빙대)	설치	• 해당 구간 수심 2.5m 이상 확보
	구조	• 미끄럼 방지 구조로 설치
	천장과의 간격	• (도약대 높이 7.5m 이상) 간격 5m 이상 • (도약대 높이 7.5m 이하) 간격 3.4 m
수처리 및 배관	정수설비	• 순환여과 방식
	급수·배수 배관	•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설치
안전시설	감시탑	• 수영장 전체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수영조 사다리	• 신체 끼임 사고 방지 구조로 설치

※ 출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나) 수영장 수질기준

-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영장 욕수의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³⁴⁾
- ▶ 수영장 욕수 수질 기준은 이용자의 건강과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염소 농도를 통한 소독 상태 관리 기준(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 물의 산성도 및 청결도를 나타내는 물리화학적 수질 기준(pH, 탁도, 유기물 농도)
 -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생 기준(총대장균군)
 -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 관리 기준(비소, 알루미늄)
 - 이용 쾌적성을 위한 수온 관리 기준
- ▶ 욕수의 수질검사 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방법을 따르며, 이 경우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³⁵⁾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 등급 기준³⁶⁾을 적용

표 III-8 수영장 욕수 수질기준

항목	기준	주요 내용
유리잔류염소	0.4mg/L ~ 1.0mg/L	• 유리잔류염소 수치가 높을 경우 눈이 따갑고 피부에 자극
수소이온농도	5.8 ~ 8.6	• 물의 산성, 알칼리 정도로 사람 몸에 무난한 물상태를 의미
탁도	1.5 NTU 이하	• 탁도가 낮을수록 물이 깨끗함을 의미
과망간산칼륨	12mg/L 이하	• 물 속 유기물(때, 땀, 오염물)의 양으로 값이 낮을수록 깨끗함을 의미
총대장균군	5개 검사 중 검출 2개 이하	• 검출 수가 낮을수록 깨끗함을 의미
비소	0.05mg/L 이하	• 몸에 해로운 독성물질인 중금속 수치가 낮을수록 깨끗함을 의미
수온	0.007mg/L 이하	
알루미늄	0.5mg/L 이하	
결합잔류염소	최대 0.5mg/L 이하	• 결합잔류염소 수치가 높을수록 수영장 특유의 강한 냄새가 많이 나며, 눈이나 피부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 출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제23조 관련)

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설치기준

- ▶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장 시설 기준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기본적인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운동 중 부상 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 기능을 갖는 바닥 구조
 - 이용자의 신체 상태 확인 및 운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기구 설치

표 III-9 설치 기준(체력단련장)

항 목	기 준
바닥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 흡수 가 가능하게 하여야 함
기구	• 체중기 등 필요 기구를 갖추어야 함

※ 출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34)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 23조 관련)

3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36)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II (좋음)의 수질평가 지수값은 24 ~ 33

라) 체육도장 설치기준

- ▶▶ 체육도장 시설 기준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적정 이용 밀도 확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됨
 - 과밀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용인원 기준
 - 낙상 및 충격에 의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바닥 구조 기준
 - 종목 특성에 맞는 운동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설비 기준

표 III-10 설치 기준(체육도장)

항 목	기 준
수용인원	• 운동전역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바닥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함
기구·설비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출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마)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 ▶▶ 골프연습장 시설 기준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적정 이용 밀도 확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타석 및 코스 등 연습 기능 중심의 시설 구성 기준
 - 타석 간 간격 및 보행 통로 확보를 통한 이용자 동선 및 충돌 방지 기준
 - 타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공간 및 보호망 설치 기준
 - 운동기기 및 퍼팅시설 등 보조시설 설치 기준

표 III-11 설치 기준(골프연습장)

항 목	기 준
연습시설 설치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2층 이하 골프코스를 설치(각 홀 부지면적 1만3천㎡ 이상 또는 총 연장 18홀 이상, 평균연습홀 코스 길이 100m 이하)
오락시설 제한	•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공간 설치 금지
타석 간 간격	• 타석 간 간격 2.5m 이상 확보
보행 통로	• 타석 뒤 보행통로 1.5m 이상 확보
안전공간 확보	• 타석 주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안전시설 설치	• 타구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그물·보호망 설치 •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 보호망 설치 생략 가능
운동기기 설치	• 연습에 필요한 운동기기 설치 가능
퍼팅연습시설 설치	• 2층 이하 퍼팅연습용 그린 설치 가능 • 단, 퍼팅연습용 그린은 골프연습 외 게임·놀이용으로 설치 금지

※ 출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3)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준

- ▶ 「체육시설법」 제4조의3³⁷⁾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 안전점검의 대상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체육시설법 제5조³⁸⁾·제6조³⁹⁾·제7조⁴⁰⁾ 및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체육시설법 제10조)에 대하여 실시함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⁴¹⁾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⁴²⁾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함
- ▶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양호, 주의, 사용중지로 구분하여 평가
 - 양호: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
 - 주의: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상태
 - 사용중지: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2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표 III-12 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구 분	점검항목	주요내용
시설물	구조 및 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 벽, 보, 마감재 균열 및 손상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 절개지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소방시설	소화 및 경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유도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화활동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의 정상 관리 여부 •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 가스시설의 정상 관리 여부
	관련 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련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 •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법 제23조) • 안전 기준 준수 여부(법 제24조) •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법 제26조)

※ 출처: 「체육시설법」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기준

37)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 「체육시설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39) 「체육시설법」 제6조(생활체육시설)

40) 「체육시설법」 제7조(직장체육시설)

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 » 「체육시설법」 제24조⁴³⁾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함

표 III-13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항 목	기 준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함 •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함 •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함 •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 •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함 •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해야 함 •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수영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됨 •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해서는 안됨 •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해야 함 •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함.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함.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음 -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함 -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함.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함 • 수영조 욕수는 아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잔류염소: 0.4mg/L부터 1.0mg/L - 수소이온농도: 5.8부터 8.6

43) 「체육시설법」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 18., 2023. 8. 8.>

항 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도: 15 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2mg/L 이하 - 총대장균군: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인 2개 이하 - 비소: 0.05mg/L 이하 / 수은: 0.007mg/L 이하 / 알루미늄: 0.5mg/L 이하 - 결합잔류염소: 최대 0.5mg/L 이하
체력단련장업	•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출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나. 「학교보건법」

-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공기질 관리, 먹는물 위생, 정기적인 점검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영장 및 탈의실·샤워실 등 부대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⁴⁴⁾
- ▶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 유해물질 저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등은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 환경위생 관리: 실내 공기질, 온도·습도, 채광 등 쾌적한 환경 유지와 환기 및 결로 방지 등 시설 환경 관리
 - 위생 및 청결 관리: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청결 유지 및 시설 내 오염·악취 방지
 - 수질 및 위생 관리: 수영장 수질 기준 유지 및 정기검사 실시, 소독 및 정수시설 운영 관리
 - 감염병 예방 관리: 수인성·접촉성 질환 예방 조치, 필요 시 이용 제한 및 방역 조치
 - 위생점검관리: 정기적인 위생 점검 및 관리체계 운영,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을 수행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

- ▶ 실내환경은 적정 환기량(1인당 21.6m³/h 이상) 확보와 균등한 공기순환이 가능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함
- ▶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은 기준 조도 및 조도 균일도를 만족하며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함
- ▶ 또한 실내온도는 18~28℃(난방 18~20℃, 냉방 26~28℃), 습도는 30~80% 범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쾌적성과 건강을 확보해야 함

표 III-14 환기·채광·조명·온습도

구 분	기 준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 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구조·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 -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44)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기준
채광(자연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조도(인공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실내온도·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출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

- ▶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 또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학교시설 중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심의외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 상·하수도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며,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 충분한 변기 수 확보, 수세식 설비 적용, 손씻기 및 소독시설 구비 등 이용자의 편의와 위생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함
- ▶ 또한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악취 및 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하절기 주 3회 이상, 동절기 주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위생 환경을 확보해야 함

표 III-15 상하수도·화장실

구 분		기 준
상·하수도		•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
화장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해야 함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단, 상·하수도시설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 줌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출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4) 폐기물 및 소음

- ▶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소음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 교내 청결 유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소각시설 제한, 실내 소음 기준 등을 제시

표 III-16 폐기물·소음

구 분		기 준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 •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 • 학교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함
소음		• 교사 내 소음은 55dB(A) 이하

※ 출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5) 공기질

- ▶ 학교 실내공기질은 미세먼지(PM2.5 35 μ g/m³, PM10 75 μ g/m³), 이산화탄소(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80 μ g/m³ 이하), 총부유세균(800CFU/m³ 이하) 등 주요 오염물질이 법정 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해야함
- ▶ 또한, 일산화탄소(10ppm 이하), 이산화질소(0.05ppm 이하), 라돈(148Bq/m³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400 μ g/m³ 이하) 등 실내 유해물질 역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표 III-17 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35 $\mu\text{g}/\text{m}^3$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μm 이하 먼지
	75 $\mu\text{g}/\text{m}^3$		• 직경 10 μm 이하 먼지
	150 $\mu\text{g}/\text{m}^3$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μm 이하 먼지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80 $\mu\text{g}/\text{m}^3$	교사, 기숙사(건축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및 급식실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부유세균	800CFU/ m^3	교사 및 급식시설	-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 m^3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1층 및 지하 교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mu\text{g}/\text{m}^3$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시설 내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진드기	100마리/ m^2	보건실	-
벤젠	30 $\mu\text{g}/\text{m}^3$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톨루엔	1,000 $\mu\text{g}/\text{m}^3$		
에틸벤젠	360 $\mu\text{g}/\text{m}^3$		
자일렌	700 $\mu\text{g}/\text{m}^3$		
스티렌	300 $\mu\text{g}/\text{m}^3$		

※ 출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6) 식품위생

- ▶▶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잔류염소, 탁도 등 주요 수질항목이 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함
- ▶▶ 또한 급수시설 및 저수조는 정기적인 청소·소독과 위생관리를 통해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 이상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함

표 III-18 식기식품 및 먹는물

구 분	기 준	
식기·식품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 •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함 •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 •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됨 	
먹는물	급수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해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해야 함(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하수 등에 의해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
	급수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 •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조치 •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 •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 제33조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 등 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 등 조치를 실시
	먹는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
	수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학교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 주기를 단축할 수 있음

※ 출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관련)

7)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종류 및 시기

- ▶▶ 학교시설의 환경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일상·정기·특별점검 체계를 운영하며, 일상점검(매 수업일)과 정기점검(연 2회 이상)을 통해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⁴⁵⁾
- ▶▶ 감염병 발생, 풍수해 등 환경오염, 시설 공사 및 신규 비품 반입 등으로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안전성을 확보

표 III-19 학교시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종류 및 시기

구분	기준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출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

다. 조도 기준

- ▶▶ 체육시설의 조도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준용함으로써⁴⁶⁾ 시설별 특성과 이용 목적에 적합한 조명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 KS A 3011에서는 활동 유형에 따라 약 3 lux에서 최대 15,000 lux까지 조도 범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주로 100~1,000 lux 범위에서 적용됨

표 III-20 조도 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활동 유형	조도 분류	조도 범위(lx)	참고 작업면 조명 방법
•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A	3-4-6	공간의 전반 조명
•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	B	6-10-15	
•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C	15-20-30	
•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D	30-40-60	
•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E	60-100-150	
•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150-200-300	작업면 조명
•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G	300-400-600	
•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H	600-1000-1500	
•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I	1500-2000-3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J	3000-4000-6000	
• 휘도 대비가 거의 안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K	6000-10000-15000	

※ 출처: KS A 3011: 1998

4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

46)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 ▶ 수영장, 체육관 등은 물반사 및 빠른 움직임이 수반되는 환경 특성상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조도 호가보가 요구되며, 특히 수영장의 경우 풀장 바닥 식별, 이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최소 150~500 lux 이상의 조도 확보가 필요함
- ▶ KS 1 3011 기준에 따르면 동일 시설 내에서도 공간 기능에 따라 조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 예를 들어 경기장, 운동공간은 높은 조도를 요구하는 반면, 관람석·복도·부대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도 기준이 적용됨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KS 기준에서 제시하는 공공시설 및 학교시설 조도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용자 위생시설 및 이동공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조도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가 요구됨
- ▶ 적정 조도의 확보는 단순한 시설 기준을 넘어 이용자의 낙상·충돌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요소로서 향후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서는 공간별 최소 조도 기준과 유지관리 상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표준 조도 및 조도 범위는 [표 Ⅲ-21]과 같음

표 Ⅲ-21 장소별 조도기준

적용범위	장소/활동		조도분류	
경기장	골프	그린	D	
		티	D	
		퍼팅연습장	E	
		페어웨이	C	
	농구	공식경기	H	
		관람석	D	
		레크리에이션	E	
		일반경기	F	
	수영	실내	레크리에이션	F
			풀장바닥	H
			경기	G
		실외	레크리에이션	E
			풀장바닥	G
			경기	F
	운동장		D	
체육관	레크리에이션, 일반운동		F	
체조	공식경기	H		
	관람석	D		
	일반경기	G		
	집단체조	F		
축구	공식경기	G		
	관람석	C		
	일반경기	E		
	집단체조	F		
태권도	공식경기	H		
	관람석	D		
	연습	F		
	일반경기	G		

적용범위	장소/활동		조도분류
공공 시설	간이음식점, 레스토랑 식당	객실·대합실·현관	F
		계단·복도 계산대·화물접수대 세면장·화장실 조리실 진열대 집회실·식탁	E G F G H G
학교	실내	강당·집회실 계단·복도·승강구 교실 급식실·식당·주방 두 건물을 잇는 복도 비상계단 세면장·화장실 실내체육관	F G G F E D E F
		실외	E E D D E
	서비스공간	농구장·배구장 수영장 육상경기장·축구장·력비장 체조장 테니스코트	E E D D E
		계단·복도·엘리베이터 세면장·화장실	C C

※ 출처: KS A 3011: 1998

라. 「학교복합시설법」

- ▶▶ 「학교복합시설법」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⁴⁷⁾
- ▶▶ 「학교복합시설법」 제5조에서는 학교의 교육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⁸⁾
- ▶▶ 학교시설과 복합시설은 상호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설치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지역주민의 이용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이용 편의성을 반영한 시설 설치가 요구됨
- ▶▶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규정함⁴⁹⁾

47) 「학교복합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8) 「학교복합시설법」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장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9)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1.>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⁵⁰⁾
-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⁵¹⁾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해당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⁵²⁾ 및 동법 시행령 제4조⁵³⁾에서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Ⅲ-22]와 같이 규정함

표 Ⅲ-22 편의시설 설치기준

구 분	기 준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 28.]

5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전문개정 2015. 1. 28.]

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분	기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출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바. 「공중위생관리법」

- ▶▶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⁵⁴⁾
- ▶▶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공중위생영업, 즉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의미함
- ▶▶ 학교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의거하여 수영장업으로 분류되나, 학교수영장의 부속시설인 샤워실, 사우나, 목욕시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목욕장업으로 분류되어 위생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1) 목욕장업 설비기준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⁵⁵⁾에 따라 목욕장업 시설은 목욕실·탈의실·발한실 등 기본시설을 갖추고, 시설간 구획·분리 및 남녀 구분 운영 등 구조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또한 발열기 안전조치, 욕수 소독설비, CCTV 설치기준 등 위생·안전·이용자 편의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함

54)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5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기본 설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p>“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p> <p>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발열기 설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한실 내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 설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해서는 안됨 •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구획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함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각각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함
욕수조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수조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수조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함

※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2) 목욕장업 수질기준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중 사우나, 샤워시설 등 목욕장 기능을 포함하는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목욕장업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 검토가 필요함⁵⁶⁾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목욕물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수와 욕조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탁도, 수소이온농도(pH),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주요 수질관리 항목에 대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 욕조수를 순환, 여과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일반 수질기준 외에도 레지오넬라균 관리기준과 유리잔류 염소 농도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소독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표 III-24 목욕장업 수질기준

구 분		기 준											
목욕물 수질기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도: 5도 이하 • 탁도: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이상 8.6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l • 총대장균군: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욕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도: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않음)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35ml/l 이하 • 대장균군: 1ml 중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욕조수 순환, 여과시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소소독 실시하지 않은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 염소 농도는 0.2mg/L이상 1mg/L 이하가 되어야 함 • 해수를 목욕물로 하는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mg/L)</th> <th rowspan="2">수소이온농도(PH)</th> <th rowspan="2">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th> </tr> <tr> <th>원수</th> <th>욕조수</th> </tr> </thead> <tbody> <tr> <td>2이하</td> <td>4이하</td> <td>7.8~8.3</td> <td>1,000 이하</td> </tr> </tbody> </table>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mg/L)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원수	욕조수	2이하	4이하	7.8~8.3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mg/L)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원수	욕조수												
2이하	4이하	7.8~8.3	1,000 이하										
수질검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 집락법에 따름 • 욕조수의 대장균군 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목욕물을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목욕물을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 목욕물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 이상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여 공고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름 •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도구의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 												

※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 관련)

5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 관련)

사. 「다중이용업소법」

- ▶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기준, 설비기준, 운영관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해당 법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은 ① 구조 및 피난 안전기준, ② 소방 및 설비기준, ③ 영업장 관리 기준, ④ 안전관리 운영 기준으로 구분됨
 - 구조 및 피난 안전기준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 피난통로 확보, 출입구 개방 유지 등 피난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내부 공간은 방화구획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소방 및 설비 기준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조기발견과 초기 대응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유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 마감재는 방염 성능을 갖춘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장 구조 및 이용관리 기준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의 통로 및 공간구조를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용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과밀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장 관리 기준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중이용업소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표 III-25 안전시설 종류

구 분	점검항목	주요내용
소방시설	소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경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기 피난기 • 피난유도선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구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그 밖의 안전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음향차단장치 • 누전차단기 • 창문

※ 출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 안전시설등

-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안전기준의 설치 기준을 통해 화재의 조기 인지, 초기 대응,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소방설비, 피난설비, 비상구 구조 및 내부 동선에 관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벨설비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난 및 유도 설비 기준)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난통로에는 시인성이 확보된 유도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상구 설치 기준)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 방향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다른 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피난통로 및 내부 구조 기준) 영업장 내부의 피난통로는 일정 폭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과도한 굴곡이나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여 대피 동선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안전시설 운영 및 전기·설비 기준) 영상, 음향시설이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 등 전기적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III-26 안전기준 설치 기준

안전시설 종류		설치·유지 기준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 피난설비	
	피난기구	•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휴대용 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 공통기준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음
	비상구등 규격	•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안전시설 종류	설치·유지 기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음 •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복층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4)나)의 기준을 따를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m²)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등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음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안전시설 종류	설치·유지 기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방화덮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출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아. 바닥매트 설치기준

- ▶ 헬스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바닥은 운동 중 낙상, 충돌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으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충격완화 성능 확보가 필요함
- ▶ 그러나 「체육시설법」 등 국내 법령에서는 바닥 구조에 대해 “안전 확보가 가능한 구조 및 재질” 등 정성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성능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 ▶ 이에, 관련 단체 기준 등을 참조할 경우 체육도장에 해당하는 태권도 활동실은 현재 국내의 태권도 경기는 World Taekwondo 규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 ▶ 경기장은 선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충격흡수, 미끄럼 방지 및 탄성 확보가 가능한 전용 매트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 태권도장 바닥은 World Taekwondo 규정에 따라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탄성과 미끄럼 방지 성능을 갖춘 매트를 적용하는 것을 참조로 제시할 수 있음
- ▶ World Taekwondo 규정에서 요구하는 매트의 탄성 및 미끄럼 성능은 국제대회용 공인 제품을 통해 검증되며 일반 체육시설에서는 해당 공인 제품 또는 국제 기준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한 매트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World Taekwondo 경기장 바닥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바닥 매트 성능 기준

- 경기구역은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탄성이 있고 미끄럽지 않은 매트로 구성되어야 함
- 매트 탄성 및 마찰 특성은 경기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World Taekwondo에서 승인된 제품을 통해 성능이 검증됨

» 시각 및 환경 기준

- 매트 색상은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나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선수의 경기 집중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해야 함
- 또한, 경기구역과 안전구역은 색상 등을 통해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치되어야 함

» 설치 기준

- 바닥매트는 전체 경기장을 균일하게 덮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단차 또는 벌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함
- 매트는 경기 중 이동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야 함

» 태권도 경기용 매트는 World Taekwondo에서 인정하는 장비 공급사의 제품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제조사 D****, K*** 등 공식 공급사의 매트가 활용되고 있음

표 III-27 D**** 사 경기장 매트 규격

구분	점검항목	주요내용
태권도/격투기용	TM 3007 UNIVERSAL TATAMI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100 × 100 × 2.4cm • 밀도: 약 115kg/m³ • 무게: 1장당 2.6kg • 재질: EVA(Ethylene-Vinyl-Acetate) • 용도: 태권도, 가라테, 킥복싱 등 타격 중심
유도 전용	TM 3001 TATAMI JUDO PUZZ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100 × 100 × 4cm • 밀도: 약 78kg/m³ • 무게: 1장당 3.1kg • 재질: EVA(Ethylene-Vinyl-Acetate) • 용도: 유도, 주짓수, 합기도 등
피트니스용	TM 3009 MULTIFITNESS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100 × 100 × 1.2cm • 밀도: 약 220kg/m³ • 무게: 1장당 2.6kg • 재질: EVA(Ethylene-Vinyl-Acetate) • 용도: 헬스장 기구실, 에어로빅, 휴게공간 등
경기용	PRO 30073 WTF RECOGNIZED 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100 × 100 × 2.4cm • 밀도: 약 1.6kgf/cm³ • 인장강도: 19.8kgf/cm³ • 재질: EVA(Ethylene-Vinyl-Acetate) • 용도: 훈련 및 경기용
기타	TM 30091 MULTIFITNESS MAT PARQU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100 × 100 × 1.2cm • 밀도: 약 220kg/m³ • 무게: 1장당 2.6kg • 재질: EVA(Ethylene-Vinyl-Acetate) • 용도: 헬스장 기구실, 에어로빅실, 다목적 공간 및 휴게공간 등 • 특징: 직사광선 환경에서는 사용 부적합

※ 출처: D**** Catalogue

가. 타 기관 시설관리 사례

1) 국민체육진흥공단

-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수영장 시설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추진
- ▶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점검 가이드」 등 수영장 특성(습식환경·다중이용·기계설비 중심 시설)을 고려한 안전관리 가이드 및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 ▶ 예방 중심 안전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핵심 목표로 관리 수행
- ▶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KSPO 45001)」를 운영⁵⁷⁾
 - 수영장 포함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중 참여대상 선정
 - 인증심사 대상시설 1개소당 안전관리 컨설팅 전문가 1인 배치
 - 현장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진행
- ▶ (심사분야) 총 4개 분야 19개 항목(변경 가능)
 - 체육시설 안전경영 관리체계 분야 총 10개 항목
 - 안전·위생·시설 및 활동수준 분야 총 2개 항목
 - 관계자 안전 의식도 분야 총 3개 항목
 - 공통필수(제출서류) 분야 총 4개 항목
- ▶ 또한,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표 및 시설 유형별 등급판정 가이드 제공
- ▶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제고를 통해 체육시설 관리자와 종사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⁵⁸⁾
 -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활용 체육시설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함

2) 전주시설공단

- ▶ 전주시설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단 운영 전 수영장에 적용하고 있음
- ▶ 전주시설공단은 약 10년 이상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 수영장 내 익수 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함
- ▶ 이후 2022년 6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취득 후 AI 기능을 접목하여 고도화를 진행함⁵⁹⁾
- ▶ 이 시스템은 수영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동작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용객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에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이용객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알림

57)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45001)」 2025년도 사업 시행 공고

58)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p.2

59) 전주시설공단(2025), 보도자료(시민 안전, 함께 성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수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인력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빠르게 이용자 안전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가능함⁶⁰⁾

3) 경기도교육청

- ▶▶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월 학교시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교육시설에 직접 제작한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함
- ▶▶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의 특징 및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음
 - 학교 관리자·시설담당자 중심의 실무형 자료 구성
 - 사진·삽화 중심 설명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 법정 점검 및 유지관리 절차 표준화 추진 및 예방 중심 시설관리 체계 구축
-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어려움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함
- ▶▶ 다만, 학교수영장과 같은 복합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살펴짐

60) 전라일보(2025), 전주시설공단 'A기반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수탁창출 모델 기대

나. 타 기관 안전점검 매뉴얼 사례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은 체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건축), 소방, 전기설비, 가스설비, 체육시설 운영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 상태와 운영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 시설물(건축) 분야는 기초·지반, 주요 구조부, 비구조부, 창호, 계단, 난간, 옥상·지붕, 부착물, 승강기 및 건물 주변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 소방·전기·가스 분야는 화재 예방,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감전 예방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항목을 포함하여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이용자 대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체육시설 분야는 「체육시설법」상 시설기준 준수 여부, 안전·위생기준 이행, 보험가입, 지도자 배치 및 종목별 시설기준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특성을 반영한 운영관리 중심의 점검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표 III-28 매뉴얼 구성(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분야	구분	주요내용
시설물(건축)	관리상태	• 안전점검
	건물내외부	• 기초 • 지반 • 주요구조부(기둥, 보, 바닥, 벽, 계단) • 비구조부(바닥벽(내·외부), 천정, 계단) • 창호 • 계단 경사로 • 난간 • 옥상/지붕 • 부착물 • 승강기 등
	건물 주변	•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 옹벽/노후축대 • 비탈면 • 부대시설 • 통행로
소방	공통	• 안전점검
	경보설비	• 화재수신기 • 감지기 • 발신기 • 시각경보기 • 비상방송
	소화설비	• 소화기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 소화펌프
	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 연결송수구 • 상수도소화전 • 공통

분야	구분	주요내용
	피난·방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강기 • 유도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 비상구 • 방화문 및 방화셔터 • 대피통로 • 피난안내도 • 피난안내 영상물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 감전예방
	가스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체육(공통)	체육시설법규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기준 • 지도자 배치 • 안전·위생기준 • 보험가입
신고체육시설 (종류별)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 • 안전·위생기준

※ 출처: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 ▶▶ 교육시설 점검총괄표는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옹벽, 사면(급경사지) 등 시설 분야별 점검항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검체계임
- ▶▶ 건축 분야는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안전성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물리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전기 분야는 인입선, 누전차단기, 배·분전반, 배선상태, 접지, 비상발전설비, 전기실 방화구획 등 전기설비 전반을 대상으로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 중심의 점검항목으로 구성됨
- ▶▶ 소방 분야는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재연설비, 소방용수, 방염물품, 화기취급시설 등 화재 대응 전반을 포괄하며, 예방·대응·피난·진압까지 전 주기를 고려한 종합 점검체계로 구성됨
- ▶▶ 특히 소방분야는 이용자 특성, 관리자 특성, 숙박 여부, 소방서 및 119센터 접근성, 주변 도로여건, 인접 건물 및 임야로의 연소확대 가능성 등 시설 외부 환경과 운영 여건까지 포함하여 실제 재난 대응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됨
- ▶▶ 승강기, 옹벽, 사면(급경사지) 등 부속 시설물에 대해 별도 점검 항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건축물 내부 설비뿐 아니라 교육시설 부지 전체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 해당 점검표는 교육시설의 시설적 결함 여부를 단순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재난 발생 가능성과 대응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안전관리 도구로 활용 가능함

표 III-29 매뉴얼 구성(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분야	구분
건축물	1. 안전관리실태
	2. 구조안전성
	3. 구조안전성
전기	1. 안전관리
	2. 인입선
	3. 누전·배선용 차단기
	4. 배·분전반
	5. 배선상태
	6. 전기기계기구 및 접지상태
	7. 비상발전설비
	8. 전기실, EPS실, 축전지실
	9. 방화구획
가스	1. 안전관리실태(공통)
	2. 배치기준(공통)
	3. 저장설비(LPG)
	4. 가스설비, 배관설비(공통)
	5. 연소기(공통)
	6. 사고예방설비(공통)
	7. 정압기(도시가스)
소방	1. 자체안전관리분야
	2. 소화기구
	3. 자동소화장치
	4. 수계소화설비(공통)
	5. 옥내/옥외 소화전
	6. 포소화 설비
	7. (간이) 스프링클러/미분무/포소화전설비
	8. 가스계소화설비
	9. 경보설비
	10. 피난설비
	11. 소화용수
	12. 제연설비
	13. 연결 송수관/연결 살수설비
	14. 비상콘센트설비
	15. 무선통신보조설비
	16. 피난방화시설
	17. 방염물품
	18. 화기취급시설
	19.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20. 소방활동에관한사항
	21. 이용자 특성
	22. 관리자 특성
	23. 관할소방서거리
	24. 관할119센터 출동로 상 상습정체구간 존재 여부

분야	구분
	25. 주변 공설소화전과의 거리
	26. 주변도로여건
	27. 숙박여부(이용자)
	28. 숙박여부(관리자)
	29. 화재 시 인접건물 연소확대 가능성
	30. 화재 시 인접임야 연소확대 가능성
	31. 중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애요인
	32. 외상환자 있는 병원·요양원 등의 경우 침대로 피난할 수 있는 적정 경사로 존재 여부
	33. 야간 근무자
승강기	
옹벽	-
사면(급경사지)	

※ 출처: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2] 점검 총괄표

3)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은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전반의 물리적 안전과 운영관리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 시설안전 분야는 구조안전, 전기설비, 기계설비, 가스시설, 소방설비로 세분화되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뿐 아니라 설비 분야별 안전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 실내환경안전 분야는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실내 공기질 및 건축재료 안전,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체계 등을 포함하여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실내 활동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외부환경안전 분야는 교내 보행 및 교통안전,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실외활동공간 안전, 교육시설 주변 위험환경 관리를 포함하여 교육시설 외부 공간까지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표 III-30 매뉴얼 구성(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분야	구분	주요내용	
A 시설안전	A-1 구조 안전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A-1-3	옹벽·석축·절토사면 등의 구조물 안전
		A-1-4	시설물 안전(점검)등급
	A-2 전기설비	A-2-1	전기설비 점검
		A-2-2	누전차단기 설치
		A-2-3	수변전실 안전
		A-2-4	EPS/TPS실 및 분전함 안전
		A-2-5	예비발전설비(비상전원) 안전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A-3 기계설비	A-3-1	기계실 유지관리
		A-3-2	공기조화(정화)설비 관리
		A-3-3	위생·급탕설비 관리

분야	구분	주요내용		
A	A-3	A-3-4	승강기 안전관리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A-4 가스시설	A-4-1	가스시설 점검	
		A-4-2	가스누출 관리를 위한 경보 및 차단설비의 설치	
		A-4-3	가스배관 설치 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A-4-4	가스기기(연소기)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A-4-5	가스저장설비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A-5 소방설비	A-5-1	소방시설 점검
	A-5-2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확보	
	A-5-3		경보설비 설치 및 성능확보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A-5-5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설치 및 성능확보	
	B 실내환경안전	B-1 안전대책	B-1-1	추락방지 조치
			B-1-2	출입문 개폐 방식에 따른 안전대책
			B-1-3	시설물 돌출부에 대한 안전조치
B-1-4			계단설치 기준	
B-1-5			체육관의 안전환경 조성	
B-1-6			도서실(자료실)의 안전환경 조성	
B-2 건축재료안전		B-2-1	실내 공기질 관리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B-2-3	화재 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관리	
		B-2-4	석면 안전관리	
B-3 예방·관리		B-3-1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	
		B-3-2	안전사고 예방 교육	
		B-3-3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활동	
		B-3-4	응급통신시설(비상벨) 및 불법촬영 점검 관리	
C 외부환경안전		C-1 보행·교통 안전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C-1-2	차량 출입 및 안전 관리
	C-1-3		비상차량 교통 계획 수립	
	C-2 보안체계관리	C-2-1	학생안전을 위한 출입관리	
		C-2-2	CCTV 설치 및 운용 점검 관리	
		C-2-3	야간 조명시설 점검 관리	
	C-3 실외활동공간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C-3-2	체육기구·놀이시설 안전 관리	
		C-3-3	운동장의 안전한 자재 사용 및 유지관리	
	C-4 교외영역	C-4-1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안전관리	
		C-4-2	공사장 등 위험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출처: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학교)

IV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 ① 전문가 의견수렴
- ②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안전관리 기준 구성 방안
- ③ 설치·안전점검 체크리스트(점검용)



- » 제4장에서는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현황 분석과 관련 법령·지침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기준(초안)을 제시함
- » 아울러 기준의 객관성 및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치·안전관리 기준을 도출함

1

전문가 의견수렴

가. 조사개요

- » 자문일시: 2026. 4. 29.(수), (1차)13:00~16:00, (2차)16:00~17:30
- » 자문장소: 교육시설관리본부
- » 자문대상: (1차)서울교육청 공무원, 교육 분야 변호사, (2차)00대학교 체육진흥센터 팀장, 00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차장 등 6명
- » 주요내용: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안전관리 방안(체크리스트 등) 관련 주요항목 검토 등

나. 자문의견

-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였음
- »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공용공간(복도·계단·로비 등) 점검 범위의 확대, 이용자 동선관리, 장애인 편의, 시설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항목 구성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음
- » 특히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 안전확보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동선 분리 및 실내환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물 외부환경(동선, 마감재 등)에 대한 안전점검 항목 유지 여부
 - 학교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과 시설 이용자(학생, 주민 등) 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고, 건물 외부 비구조재 파손으로 인한 위험요소 점검 항목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
 - 건물 공용공간(복도, 계단 등)에 대한 안전점검 항목 유지 여부
 - 학교수영장 및 각 부대시설 출입을 위해 이용되는 복도, 계단, 로비 등의 공용공간에 대한 안전점검 항목의 포함 필요성 검토

표 IV-1 전문가 자문의견 및 반영여부

구분	자문의견	반영여부
기 반영	• 내외부 이용객 및 주민 민원에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항목 추가	• (기반영) 동선분리 항목 마련
	• 체온관리실의 특수성 반영 미흡 - 최고 이용 온도 제한 및 게시 여부 - 이용 시간 제한 및 게시 여부 - 심장질환자 등 이용 제한 안내 여부	• (기반영)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마련(안전 및 위생 매뉴얼 작성 및 게시, 안전수칙 게시 등)
	• 체크리스트 상 공통부분과 개별부분 구분	• 공통 및 각 부대시설별 체크리스트로 구분 반영
	• 객관적 지표 기준 추가 필요	• (기반영) 「체육시설법」, 「교육시설법」 등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근거로 한 항목 도출로 명확한 근거 기준 지표 구성으로 기반영
반영 재검토	• 유지관리 전문업체가 확인할 사항은 특이사항 등에 유지 관리 전문업체 확인 사항임을 표기	• 전문기관을 통한 법정 점검 수행 등 학교 주체의 의무적 실행 범위는 제외하고, 이외 항목은 공용항목에 반영
	• 가스시설 자체점검 기록 관리는 안전관리상 중요한 항목 이므로 복원 여부 검토 (학교 전체의 점검일 경우 부대 시설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 점검 및 조치 기록의 증빙 체계 강화	
	• 소방·가스·전기 등 위험 설비 관리	
	• 건축·시설물 안전 및 환경·위생 관리	
	• 정기 안전점검 절차 및 보고	
	• 응급처치장비(AED 등) 비치 여부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공통기준 아목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이나 안전상 중요한 장비이므로 항목 권장 반영
	• 특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 점검 항목 필요	• 관련 사항의 경우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사항이 다수 임에 따라,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반영 고려
	• 정기점검 및 기록·보존 의무의 중요성 확인	•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관리주의 의무 관련 방안 마련으로 반영
	• 체크리스트 작성 완료 후 점검사항 예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담당부서가 점검할 수 있도록 기재 요함	• 매뉴얼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과업 범위 미포함
	• 위험도 기반의 등급 및 판정 기준 세분화	• 다만, 체크리스트 항목 구성 및 근거 참고 자료 제시
	• 기존 부대 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허가 등	• 시설 설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과업 내용 불일치에 따른 미반영
	• 관리 부대시설의 종류 한정 및 이외 부대시설 간소화 등	
• 주요 항목에 대한 정량적 기준 또는 판정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	• 매뉴얼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과업 범위 미포함 • 다만, 체크리스트 항목 구성 및 근거 참고 자료 제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이행 도구로서, 경영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중요 문서로 활용	• 시설 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관련 사항 반영 및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업 내용 불일치에 따른 미반영	
• 각 점검 항목은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어린이통학버스 항목의 세부항목 추가	•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이외의 항목으로 다른 방안 마련으로 협의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시설 유형별 특성과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함
 - **(설치단계, 운영단계)** 점검 항목은 시설 설치 시 요구되는 하드웨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설치단계와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단계로 구분함
 -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 시설 유형은 로비, 복도, 승강기 등과 같이 공용공간에서의 기준과,
 - **(8개 부대시설별 구성)** 앞 장의 분석 법령과 지침, 기준 등을 참고하고,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특성별 체육시설(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도장-태권도 등, 골프연습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체육교습실-축구 등, GX실·에어로빅·필라테스 등), 편의시설(체온관리실), 기타시설(문화강좌실 등)로 구분하여 8개 부대시설별 안전점검 항목을 구성함
 - **(공통 적용,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 부대시설별 안전점검 항목은 상기 8개 부대시설에서 동일한 ‘공통 적용’ 항목과 차별적인 ‘시설별 특성 적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현장 활용성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함
 - **(점검 분야)**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안전·위생, 동선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함
-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은 관련 법령, 지침 및 기존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체육시설법」, 「교육시설법」, 「학교보건법」, 「학교복합시설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학교수영장 부대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
 -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학교 환경위생 관리 매뉴얼,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지침과 기존 교육시설 안전점검 기준을 참고하여 현장 적용성을 강화함
 - 다만, 본 연구에서의 항목들은 개별 항목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한 제시가 아닌 타 법령, 기준 등에서 기준을 종합 구성함에 따른 제한점을 토대로 마련되었음을 전제함

가.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공용공간(로비, 승강기, 복도 등)에 대한 기준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 요소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음
- ▶ 기존의 단순 시설 설치 중심의 설치단계 기준과 운영단계 기준까지 포함한 점검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음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학생과 외부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 특성을 가지므로, 비상벨·CCTV·불법촬영 점검·외부인 동선분리 등 범죄예방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 ▶ 공조설비, 급탕설비, 먹는 물 수질관리, 공조기 필터 관리 등 위생·환경 관련 기준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쾌적한 시설환경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함
- ▶ 방화구획, 경보설비, 소화펌프, 피난기구 관리 등 화재 대응체계를 포함하고, 누전차단기, 접지, 가스누출감지기 등 설비 안전기준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화재·감전·가스사고 등 중대 재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 ▶ 본 기준은 체육시설법, 교육시설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에 적용 가능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표 IV-2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공용부 항목)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건축	설치 탈의실 설치	근거	[설명]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운영 응급통신시설 (비상벨)	근거	[설명] “응급통신시설(비상벨)의 상시 작동 및 관리자와 연동 여부 확인 (설치장소: 남녀화장실, 사각지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간)” [근거]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서울형학교 CPTED 가이드 라인 개발”
	운영 불법촬영 점검	근거	[설명] 불법촬영기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기계	설치 급수시설 설치	근거	[설명]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운영 승강기 안전	근거	[설명] 범죄 예방을 위해 승강기 내 CCTV를 설치, 승강기 내 비상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기계실 유지	근거	[설명] 기계실 내부에 불필요한 장비 또는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5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공기조화(정화) 설비	근거	[설명] 1~2개월에 1회 이상 프리필터 청소를 실시, 연 2회 이상 미디움 이상의 필터 청소를 실시, 5년에 1회 이상 전문가에 의뢰하여 종합분해세척 및 실외기 청소 실시 등 정기적 냉난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위생·급탕설비	근거	[설명] 위생설비의 작동상황 및 상태를 점검 기록,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하고 청소필증 및 관리카드를 보관, 수도 급수관에 대하여 일반검사 또는 전문 검사를 실시, 저수조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또는 옥상물탱크를 청소, 지하수 음용수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생활용수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하고 결과서를 보관, 정수기, 냉·온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 또는 소독하고 결과 기록 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소방	설치 방화구획	방화구획의 관통부 등이 안전하게 구획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케이블 등 관통부(전기실, 발전기실, EPS실 등), 방화셔터 셔터박스는 내화 채움구조로 마감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경보설비 관리	경보설비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설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경보 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 여부 확인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소화펌프 관리	소화펌프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설명] 펌프(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용 펌프)의 입출구에 설치된 밸브의 정상 개방상태, 압력챔버에 설치된 압력계의 정상상태 지시, 동력제어반(MCC패널) 선택스위치의 '자동' 위치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피난기구 관리	피난기구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설명]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표지 미부착, 인식불가 등)유무, 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파손·변형 유무,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의 관리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운영 대피통로 관리	대피통로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설명]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설치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전기	운영 전기기계기구 관리	전기기계기구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설명] 전기기계기구(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등) 접지시공 여부 확인 [설명] 적절한 누전차단기에 연결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전기설비분전반 관리	전기설비 분전반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설명] EPS / TPS실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 [설명] 분전반 내에 분진 없이 관리 [설명] 분전반 외함에 분전반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물 적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가스	설치 가스누출	근거	<p>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p> <p>[설명]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행정(관리)실 등)에 설치되어 있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0조 [근거] 산업통상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근거]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근거] 고용노동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p>
	설치 연소기	근거	<p>연소기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p> <p>[설명] 보일러, 온수기설치(시공표지판 포함)와 배기통재로는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설명] 개방형 연소기 또는 강제(급)배기식 연소기는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설명] 목욕탕이나 환기불량 장소에 보일러나 온수기가 설치되지 않고(밀폐식의 경우 제외), 배기통은 내식성 재료로 배기에 방해가 없고, 접속부는 내열 실리콘 등(석고봉대 제외)으로 마감조치 할 것 [설명] 개방형 연소기가 설치된 곳은 환풍기나 환기구 설치할 것 [설명] 급기구 설치되어 있고, 배기통이 정상 체결되어 있으며, 배기통 끝에 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p>
	운영 화재예방	근거	<p>가스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p> <p>[설명] LPG 용기의 옥외보관, 차양막 설치, 전도방지, 보호 덮개 등의 가스 기구의 적절한 관리상태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 대기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가스 전열기 등 이와 유사한 것</p> <p>[근거]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근거]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p>
안전·위생	설치 공조기 필터 관리	근거	<p>공조기 필터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p> <p>[설명] 적정 필터를 사용한 공기순환기를 사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순환 가능하도록 계획 및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2021),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개정)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설치 응급실 및 구급약품 설치	근거	<p>응급실 및 구급약품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p> <p>[설명]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확인 (AED의 경우 설치 권고)</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근거]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운영 먹는 물 수질 관리		<p>먹는 물 수질기준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p> <p>[설명]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정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거] 교육부(202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p>
	운영 안전 및 위생 관리	근거	<p>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설명] 이용질서 유지 여부가 관리되고,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p>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p>[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응 및 대비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설명] 안전·위생 매뉴얼 작성 및 게시 및 안전수칙이 게시 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근거]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p>
	<p>운영 부착물 관리</p>	<p>외부 부착물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p> <p>[설명] 광고간판, 조명, 안내 사인물, 광고탑 등의 파손 등 안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당실의 경우 실 외부 등)</p> <p>[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동선 관리</p>	<p>운영 동선분리</p>	<p>외부인과의 동선분리는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설명] 학교 교육활동 침해 및 학생 안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외부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p> <p>[근거]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p> <p>[근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6), 2026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p>

나. 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안전점검 항목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시설별 공통관리 항목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안전·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였음
- ▶ 출입문, 창호, 구조부, 비구조요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일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사고 뿐 아니라 시설 노후화 및 재난 발생 시의 2차 피해 예방까지 고려하였음
- ▶ 장애인 편의시설(BF) 환경 구축 기준을 포함함으로써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시설환경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 환기시설, 조도, 가스환기 등 실내 환경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체육활동 공간의 쾌적성과 건강 보호를 고려한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였음
- ▶ 소화설비, 피난안내도, 방화문, 대피통로 등 피난 및 화재 대응과 관련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 특성을 고려한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 또한 물 사용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콘센트 적용, 전기기계기구 관리 등 전기 분야 안전기준을 포함하여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함

표 IV-3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항목)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건축	설치 출입문 안전	출입문 안전관리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손끼임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 속도조절장치, 자동문 등 설치 여부 확인 [설명] 여닫이문 회전반경 안전에 대한 후퇴 시인성 표시 및 시창(반투명 필름) 설치 여부 확인 [설명] (유리재로 출입문) 강화유리 사용 또는 파괴시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방지필름 부착 등 조치를 통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BF 환경 구축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체육시설 등의 이용을 위한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운영	주요구조부 안전 확보	주요 구조부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설명] 균열, 누수, 침수, 백태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설명]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설명] 철골재 접합부의 볼트 누락, 철골재 부식, 도장탈락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설명] 철골재(보, 바닥 등)의 휨, 처짐, 변형 등의 손상 발생 여부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운영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비구조 요소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설명] 천장 및 벽면에 설치되는 장비들의 흔들림, 탈락 등 고정상태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디지털장비(전동 스크린, 전동 블라인드, 빔 프로젝트 등) 및 선풍기, 냉·난방기, 스피커, 게시판 등)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p>[설명] 마감재의 파손(균열, 탈락), 오염, 누수 및 침수 흔적의 발생 여부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조</p> <p>[근거]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6장</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창호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운영	창호 안전 관리	근거	<p>[설명] 유리창 및 방충망의 설치, 유리의 깨짐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환기시설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기계	설치 환기시설 설치	근거	<p>[설명]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p> <p>[근거]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p> <p>[근거] 교육부(202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p>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설치 소화설비의 설치	근거	<p>[설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p> <p>[설명]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p> <p>[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p> <p>[근거]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피난안내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 피난안내도 설치	근거	<p>[설명] 피난안내도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피난기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표시가 적절하게 부착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피난안내도 현위치 표기)</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4조</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방화셔터 바닥에 시인성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소방	설치 방화셔터 시인성	근거	<p>[설명] 방화셔터 바닥에 스티커 등 안내표시 부착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3조</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소화기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운영	소화기 관리	근거	<p>[설명]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지시압력의 정상범위, 안전핀 체결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옥내소화전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운영	옥내 소화전 관리	근거	<p>[설명] 주변 적치물 유무, 표시등, 호스 등 관리 상태 등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운영 스프링클러 관리	스프링클러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p>[설명] 헤드의 파손 및 탈락이 없고, 헤드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여부 및 작동 준비상태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운영 유도등 관리	유도등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p>[설명] 탈락, 파손, 변형 등이 없는 및 상시 점등, 식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유무 등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p>[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p>	
운영 휴대용 비상 조명등 관리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p>[설명] 탈거 시 자동 점등되고, 용도에 맞게 적정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운영 비상구 관리	비상구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p>[설명] 화재시에 즉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3조</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p>[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p>	
운영 방화문 및 방화셔터 관리	방화문 및 방화셔터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p>[설명]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방해되는 물건이 없도록 관리, 셔터, 레일 등 외관의 정상상태 및 장애물 적치 여부, 방화셔터 연동제어기의 정상 대기 상태 유지 여부, 옥상출입 자동개폐장치(위급시 수동개폐 가능), 적재물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3조, 제14조</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p>[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p>	
운영 대피통로 관리	대피통로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p>[설명]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설치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p>[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p>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차단기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물사용공간의 누전차단기(15mA)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콘센트 설치	콘센트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공간 특성에 적합한 콘센트를 설치 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부대시설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업무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물 사용실 :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 멀티형 콘센트 등 다중(문어발식)으로 사용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접지극 부 착형 콘센트를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전기	조도의 적정성	체육시설내 조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체육시설 내의 조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교육부(202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운영	전기설비 분전반 관리	전기설비 분전반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EPS / TPS실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 [설명] 분전반 내에 분진 없이 관리 [설명] 분전반 외함에 분전반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물 적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운영	전기기계기구의 관리	전기기계기구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전기기계기구(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등) 접지시공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 적절한 누전차단기에 연결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 콘센트, 스위치의 접속상태 등 외관과 고정 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가스	가스누출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행정(관리)실 등)에 설치되어 있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0조 [근거] 산업통상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안전· 위생	운영 화재예방		<p>[근거]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p> <p>[근거] 고용노동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p>
		근거	<p>가스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p> <p>[설명] LPG 용기의 옥외보관, 차양막 설치, 전도방지, 보호 덮개 등의 가스 기구의 적절한 관리상태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 대기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가스 전열기 등 이와 유사한 것</p> <p>[근거]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p> <p>[근거]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p>
	운영 가스시설 환기		<p>가스시설 환기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설명] 설치된 공간 내부에 환풍기나 환기구가 설치되어 고장 없이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3안전·유지관리기준」 제17조</p>
	운영 부착물 관리	근거	<p>부착물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p> <p>[설명] 실내 광고간판, 조명, 안내 사인물 등의 파손 등 안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p> <p>[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운영 안전 및 위생관리	근거	<p>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설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정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p> <p>[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p> <p>[근거]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p>	

다.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 문화강좌실 등 시설의 기능과 이용 형태가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 이에 따라 시설별 이용행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음
 - 체력단련장-헬스장
 - 체육도장-태권도 등
 - 골프연습장
 -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 체육교습-축구 등
 - GX실·에어로빅·필라테스 등
 - 체온관리실
 - 문화강좌실 등
- ▶ 시설별 기준은 단순한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추락, 충돌, 미끄러짐, 화재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음
- ▶ 특히 창호, 바닥재, 충격흡수재, 안전거리 확보 등 건축적 안전요소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 체육시설의 경우 운동기구 간 간격, 타석과 스크린 간 거리, 보호망 설치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세부 안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충돌 및 낙상, 타구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IV-4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시설특성별 항목)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 체력단련장-헬스장 >		
건축	설치 추락방지 조치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상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이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건축물 마감재 안전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바닥 재질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 체육관 안전	근거	[설명]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기구 간 안전거리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설치 기구간 거리 확보	근거	[설명] 이용자의 운동 방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 공간의 충분한 확보 여부 확인(예-트레드밀 후면 1m 이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ACSM's Health facility standards and guidelines, 〈Health/ Fitness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소방	설치 소화설비의 설치	근거	[설명]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일반 체육시설 : 분말소화기 - 통신기기, 기계·전기실, 변전실, 주차장 :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근거]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안전·위생	운영 안전 및 위생 관리	근거	[설명]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지도 및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운영 지도자 배치	근거	[설명]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 체육도장-태권도 등 〉			
건축	설치 추락방지 조치	근거	[설명]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상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	근거	[설명]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건축물 마감재 안전	근거	[설명]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설치 바닥 재질	근거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운영 수용인원 적정성	근거	수용인원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설명] 3.3㎡당 수용인원 1명 이하로 관리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방 소화설비의 설치	근거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일반 체육시설 : 분말소화기 - 통신기기, 기계·전기실, 변전실, 주차장 :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안전·위생 안전 및 위생 관리	근거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명]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지도 및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운영 지도자 배치	근거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설명]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 골프연습장 >			
설치 추락방지 조치	근거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상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건축물 마감재 안전	근거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바닥 재질	근거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설치 체육관 안전	근거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설명]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설명] 벽 충격흡수 재질, 바닥의 논슬립 재질의 적정 설치 여부 확인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설명]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물망·보호망 등의 설치 및 유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설치	기구간 거리 확보	기구 간 안전거리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티(타점) 간 간격 2.5m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 통행로와 거리 1.5m 이상 확보 설치 등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소화	설치 소화설비의 설치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일반 체육시설 : 분말소화기 - 통신기기, 기계·전기실, 변전실, 주차장 :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근거]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PC 101)」 제4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			
설치	추락방지 조치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상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건축물 마감재 안전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건축	설치 바닥 재질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설명]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설치	체육관 안전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벽 충격흡수 재질, 바닥의 논슬립 재질의 적정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설치	기구간 거리 확보	기구 간 안전거리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타석과 스크린까지의 거리 3m 이상, 타석과 천장과의 높이 2.8m,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 1.5m, 스크린과 뒤 벽면의 이격 설치 등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소방	설치 소화설비의 설치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체육시설 : 분말소화기 - 통신기기, 기계·전기실, 변전실, 주차장 :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근거]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안전·위생	운영 안전 및 위생 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대여용 장비의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 체육교습·축구 등 >			
건축	설치 추락방지 조치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상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이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건축물 마감재 안전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바닥 재질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설명]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설치 체육관 안전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충격흡수재(높이 150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소방	설치 소화설비의 설치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일반 체육시설 : 분말소화기 - 통신기기, 기계·전기실, 변전실, 주차장 :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근거]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안전·위생	운영 안전 및 위생 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거	[설명]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지도 및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운영 지도자 배치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근거	[설명]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 GX실·에어로빅·필라테스 등 >			
건축	설치 추락방지 조치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상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 인자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건축물 마감재 안전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바닥 재질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설명]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설치 체육관 안전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충격흡수재(높이 150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기구간 거리 확보	기구 간 안전거리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이용자의 운동 방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 공간의 충분한 확보 여부 확인(예-트레드밀 후면 1m 이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ACSM's Health facility standards and guidelines, <Health/ Fitness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소방	설치 소화설비의 설치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일반 체육시설 : 분말소화기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 통신기기, 기계·전기실, 변전실, 주차장 :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근거]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 체온관리실 >			
건축	설치 건축물 마감재 안전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건축	설치 바닥 재질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소방	설치 소화설비의 설치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일반 체육시설 : 분말소화기 - 통신기기, 기계·전기실, 변전실, 주차장 :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근거]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안전· 위생	설치 실내 안전 확인	실내가 잘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실내가 잘보이도록 시창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운영 안전 및 위생 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거	[설명] 이용질서 유지 여부가 관리되고,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실내가 잘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온도계와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 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근거]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 문화강좌실 등 >			
건축	설치 추락방지 조치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상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건축	설치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및 근거(상세)	
소방	설치 건축물 마감재 안전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설치 바닥 재질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근거]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소방	설치 소화설비의 설치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근거	[설명]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일반 체육시설 : 분말소화기 - 통신기기, 기계·전기실, 변전실, 주차장 :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
			[근거]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근거]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근거]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 ▶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은 법령, 기술기준, 안전인증 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전문용어와 기술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전문가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 이에 따라 현장 점검자와 시설관리자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점검용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 ▶ 점검용 체크리스트는 원 기준의 취지와 점검 목적은 유지하되 전문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하고, 점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함
- ▶ 또한 단순한 시설 설치 여부 확인이 아닌 '왜 점검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추락 예방, 화재 예방, 감전 예방 등 안전관리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 이를 통해 시설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위탁운영기관, 현장 종사자 등 전문적인 시설관리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 특히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다양한 운영주체와 관리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이해하기 쉬운 체크리스트 제공은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점검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표 IV-5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주의	불량	
건축	수용인원에 적합하게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내 비상벨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계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승강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계실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장비를 쌓아두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필터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	정수기 등이 정기적으로 청소되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번지지 않도록 벽·천장 등의 틈새가 안전하게 막혀 있으며, 방화셔터 주변도 내화성 자재로 마감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재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화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기	피난기구는 비상시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 등 대피 통로에 장애물이 없어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전기기기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지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전기기기가 누전 발생 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주의	불량	
	있도록 누전차단기에 연결되어 있는가?				
	분전반 등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	가스 누출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 전열기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위생	공기순환기에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고 있는가?(AED 설치 권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먹는물의 수질이 적정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설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음주자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위생 매뉴얼과 안전수칙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선관리	공용공간의 조명과 안내판 등 부차물이 떨어지거나 파손될 위험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부인과 학생의 이동 경로가 분리되어 있어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표 IV-6 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주의	불량	
건축	출입문에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패드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바닥에 주의 표시가 되어 있고, 문 너머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리문이 깨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강화유리를 사용하거나 비산방지필름이 부착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균열, 누수, 휨, 처짐 등의 이상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천장재, 벽 마감재 등 시설의 부차물이 떨어질 위험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창문은 파손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⁶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계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	옥내소화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화기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상시 대피 경로와 소화기 등 피난기구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피난 안내도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화셔터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닥에 안내 표시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주의	불량	
	소화기의 압력이 정상이며 안전핀이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 등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옥내소화전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아 비상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스프링클러가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비상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상구가 화재 등 비상시 즉시 열 수 있으며, 대피에 방해가 되는 물건 없이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화문과 방화셔터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아 비상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 등 대피 통로에 장애물이 없어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기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15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간 특성에 적합한 콘센트를 설치 하고 있는가? - 일반 부대시설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물 사용실 :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어발식으로 여러 전기기기를 동시에 연결하지 않고, 접지 기능이 있는 안전한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명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장고, 에어컨 등의 콘센트와 스위치가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⁶²⁾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전기기기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지되어 있는가? ⁶³⁾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전기기기가 누전 발생 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에 연결되어 있는가? ⁶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분전반 등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	가스시설이 있는 공간의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 누출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 전열기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위생	시설과 설비,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내 광고간판, 조명, 안내 사인물 등의 부착물이 떨어지거나 파손될 위험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1)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은 '해당없음' 점검결과의 경우 선택(□)
 62) 체온관리실의 해당 점검내용은 '해당없음' 점검결과의 경우 선택(□)
 63) 체온관리실의 해당 점검내용은 '해당없음' 점검결과의 경우 선택(□)
 64) 체온관리실의 해당 점검내용은 '해당없음' 점검결과의 경우 선택(□)

다.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1) 체력단련장(헬스장)-점검용

표 IV-7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해당 없음
		적합	부적합		
			주의	불량	
건축	창문 아래턱(창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벽, 기둥 등의 모서리에 충격 방지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높이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 내부 마감재가 화재에 강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각 실의 바닥이 충격을 줄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육활동 중 부딪혀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에 충격 방지 보호대(높이 150cm 이상)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 체육시설에 적합한 분말소화기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위생	이용자가 기구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구 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용자가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설 규모와 이용 인원 에 맞는 적정 수의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체육도장(태권도 등)-점검용

표 IV-8 체육도장(태권도 등)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해당 없음
		적합	부적합		
			주의	불량	
건축	창문 아래턱(창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벽, 기둥 등의 모서리에 충격 방지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높이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 내부 마감재가 화재에 강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각 실의 바닥이 충격을 줄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용자가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3.3㎡당 1명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 체육시설에 적합한 분말소화기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위생	이용자가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설 규모와 이용 인원 에 맞는 적정 수의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골프연습장-점검용

표 IV-9 골프연습장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주의	불량	
건축	창문 아래턱(창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물 내부 마감재가 화재에 강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각 실의 바닥이 충격을 줄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체육활동 중 공이나 운동기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그물망 등이 설치·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타석 간 간격(2.5m 이상)과 타석 뒤 보행 공간(1.5m 이상)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방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일반 체육시설에는 분말소화기, 통신기기실·기계·전기실·변전실·주차장에는 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소화기,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4)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점검용

표 IV-10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주의	불량	
건축	창문 아래턱(창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물 내부 마감재가 화재에 강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각 실의 바닥이 충격을 줄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타석과 스크린(3m 이상), 천장 높이(2.8m 이상), 대기석과의 거리(1.5m 이상)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 체육시설에 적합한 분말소화기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안전·위생	대여용 장비의 안전 및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5) 체육교습(축구 등)-점검용

표 IV-11 체육교습(축구 등)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해당 없음
		적합	부적합		
			주의	불량	
건축	창문 아래턱(창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벽, 기둥 등의 모서리에 충격 방지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높이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물 내부 마감재가 화재에 강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각 실의 바닥이 충격을 줄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체육활동 중 부딪혀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에 충격 방지 보호대(높이 150cm 이상)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 체육시설에 적합한 분말소화기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안전·위생	이용자가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 규모와 이용 인원에 맞는 적정 수의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6) GX실·에어로빅·필라테스 등-점검용

표 IV-12 GX실·에어로빅·필라테스 등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해당 없음
		적합	부적합		
			주의	불량	
건축	창문 아래턱(창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벽, 기둥 등의 모서리에 충격 방지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높이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물 내부 마감재가 화재에 강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각 실의 바닥이 충격을 줄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체육활동 중 부딪혀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에 충격 방지 보호대(높이 150cm 이상)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이용자가 기구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구 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 체육시설에 적합한 분말소화기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안전·위생	이용자가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 규모와 이용 인원에 맞는 적정 수의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7) 체온관리실-점검용

표 IV-13 체온관리실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주의	불량	
건축	발열기 주변에 화상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이 잘 붙지 않는 재료로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닥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 체육시설에 적합한 분말소화기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위생	실내 상황을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창(확인창)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설 이용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음주자 등의 이용이 적절하게 제한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문화강좌실 등-점검용

표 IV-14 문화강좌실 등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점검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주의	불량	
건축	창문 아래턱(창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벽체 기둥 등 돌출부 모서리에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 인지를 위한 색상 구분 등 시인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닥 재질은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 체육시설에 적합한 분말소화기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